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1

현안분석

-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
- 공공부문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

기획

에드워드 프레스콧의 학문세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 기업이익 증대 불구 세수입은 2000년 수준에 못 미쳐 외

정책흐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편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국제조세행정의 도전과 대응 / 최병철
현안분석	6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 김 진
	23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 / 한상국
	39	공공부문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 / 박노욱
기획	54	에드워드 프레스콧의 학문세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64	미국, 기업이익 증대 불구 세수입은 2000년 수준에 못 미쳐 외
정책흐름	74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78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81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간 연장
	83	금년도 종합토지세 2조 1,168억원 부과
재정통계	90	자산재평가세 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01	유엔의 “국제조세기구” 창설 기도 외

국제조세행정의 도전과 대응

최병철 / 국제청 국제조세관리관

세계화(Globalization), 경쟁, 변화, 혁신……. 이 시대의 키워드이다. GATT와 WTO는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7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도는 자본의 자유화를 그리고 80년대 후반 냉전체제의 종말은 노동 및 기술이동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국제연맹모델협약(1928) 이래 국제조세 분야의 기본적인

도전은 개별국가간 국제세율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조세가 국제거래에 중립적(이중과세 방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국가의 공정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간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전가격과세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제도 등 국제조세에 관한 법규를 정비하거나,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IT기술의 고도화와 심화되는 무한경쟁 속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한층 더 커졌으며, 재화·용역의 거래방식도 복잡·다양화되었다. 또한 세계금융시장이 통합되고 금융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조세제도뿐만 아니라 그 행정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Nitin Nohria 교수는 '시대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지적 능력(contextual intelligence)'을 가진 기업만이 오래도록 살아남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특히 세계경제흐름



과 밀착되어 있는 조세행정은 환경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해서 새롭고 생산적으로 변화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국제조세행정이 직면하는 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세기 후반 이래 국경을 초월한 재화·자본·기술거래의 급증은 다국적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 결과이다. 세계시장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개별국가에 있어 기회이자 위협이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자본을 축적시켜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많은 국가들이 자본유치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등 이른바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최근 유해조세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을 발족시켜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자원흐름의 왜곡과 개별국가 재정기반의 잠식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상당 부분 유해한 조세경쟁이 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EU를 중심으로 국가간 조세조화(tax harmonization)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조세제도의 차이보다 조세행정의 차이가 다국적 기업에게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다국적 기업은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라 소득을 창출한 국가에 소득의 공정한 부분을 납세로써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핵심목표는 개별기업의 세후이익이 아닌 그룹 전체 세후이익

세계경제흐름과 밀착되어 있는 조세행정은 환경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해서 새롭게 생산적으로 변화해 나아가야 한다. 국제조세행정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과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면서 그 균형을 잡아나갈 것이다.

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 기업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시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각국에 설립된 관계회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세조약을 적용받도록 거래를 구성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treaty shopping). 한편 이러한 실무시장에서의 조세회피와는 별개로, 최근에는 세계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금융공학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를 통해 옵션, 선물, 스왑 등을 복잡하게 설계하여 특수관계자간 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도의 조세회피 행위는 지금까지의 국세청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도전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고위 정책담당자에게 효율과 공평 사이에, 사회정책 목표와 경제정책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긴장관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과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면서 그 균형을 잡아나갈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째, 국세청은 국제조세행정에 있어 내외국인간 무차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사행정을 집행하고자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발표하고, 수시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조세 관련 법규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높이고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OECD의 국제과세기준 논의에 관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주권을 지키면서 새로이 정립된 과세기준을 적시에 도입하여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국세청은 새롭게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외국계 법인에게 고객지향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외국 상공인단체 간담회에 적극 참석하고 있고 특히, 정부기관 최초로 국세청 'Open House'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외국 상공인단체 임원들에게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운영 방향과 세제·세정지원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음브즈만을 설치하여 외국계 기업의 세금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으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조세유인제도와 세금신고납부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제조세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국세원의 탈세보다도 국제세원의 탈루는 경제적 자원이 외국으로 이전된다는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이나 트리트 쇼핑

(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심리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에서 이전가격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세청은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전가격 문제의 사전적 해결을 통해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한 과세당국과 다국적 기업간의 사후적 조세 불복에서 오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PA제도가 활성화되면, 다국적 기업은 세무조사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국세청은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면서 APA 과정에서 획득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늘어나는 APA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국세청은 APA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 및 은행의 외환거래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세청의 국제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시킬 것이다. 국세청이 당면한 다른 과제 중 하나는 국제협상테이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지켜내고 복잡다양한 국제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국세청은 이미 미국의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 우수한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이 정예 전문인력의 풀(pool)을 더욱 확대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조세행정 환경변화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부단히 혁신해 나갈 것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것이며, 외국계 법인의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제세원의 탈루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 정교한 검증시스템 그리고 엄정한 조사로 대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현안분석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예산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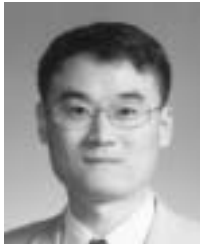
한상국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공공부문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 예산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kim@kipf.re.kr)

I. 서론

일반적으로 정부의 채무와 예산적자가 과다할 경우 국가경제의 건전성, 성장잠재력, 경제정책의 유효성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정부수입을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정부지출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예산제도의 변화를 통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70%에 달했던 1990년대 초 재정건전성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곧 예산제도의 변화로 새로운 '지출관리체계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가 수립·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2004년 현재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40% 정도로 낮아져 재정건전화가 가시화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경제성장에 기인한 재정건전성 회복도 물론 상당 부분 있었지만, 예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동반한 재정규율이 재정건전화 달성에 효과적이었음이 주장되어 왔다.

최근 중요한 몇 가지의 변화가 우리나라 예산제도에서 발생하였는데, 중기재정, 성과주의, 총액할당자율배분, 통합재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는 주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인식이 깔려 있다. 이 중 중기재정은 단년도 재정운용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기적 재정수요와 세입 등을 감안하여 재정기획의 효율성 (efficiency)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다년도 재정운용의 틀을 통해 향후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화 방안의 모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기적 추이를 예견함으로써 전체 예산구조의 유지 가능성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70%에 달했던 1990년대 초 재정건전성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곧 예산제도의 변화로 새로운 '지출관리체계(Expenditure Management System)'가 수립·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2004년 현재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40% 정도로 낮아져 재정건전화 가시화되었다.

(sustainability)과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제고할 수 있다. 또한, 다년도 재정운용의 틀에 근거하여 중기적 관점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효율성 제고와 연계하여 모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한 모범사례로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예산제도인 '지출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0년에 걸쳐 시행된 '지출관리체계'의 시행 초기에 발생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 그에 따른 정부부채의 항구적인 감소추세의 확립, 우선순위에 집중한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성장애의 공헌, 이에 따른 선예산동학의 성립 등을 예산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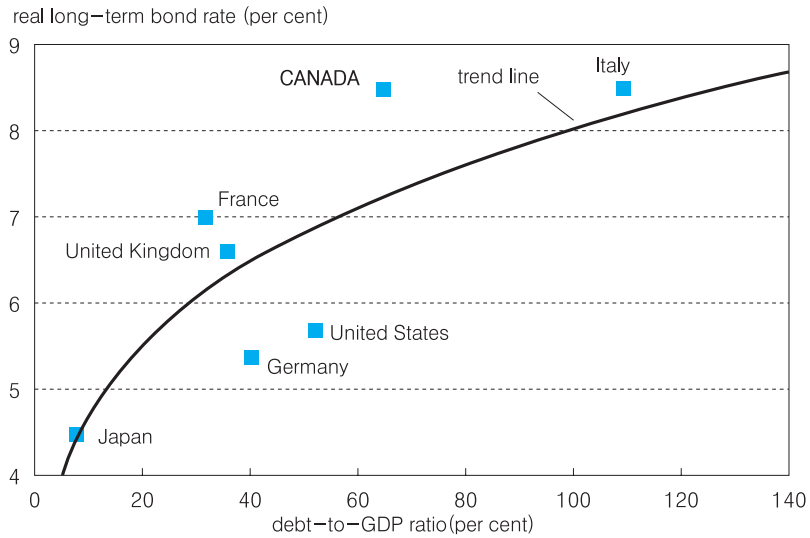
1993년의 선거에서 승리한 장 크레티엔(Jean Chretien)의 자유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직면한 캐나다 경제의 문제는 비대해진 정부부채였다. [그림 II-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과 실질장기채권수익률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높았다. 한 해에 생산되는 총부가가치의 60% 이상의 빚을 연방정부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은 만큼 연방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이자도 더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정부부채를 초래하고 있었다.

[그림 II-1]은 G7국가들의 자료를 점으로 나타내고 그 추이선(trend line)을 보여준다. 캐나다는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큰데, 추이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는 G7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이것은 예산적자, 자금차입, 이자율 상승, 경기악화, 세입감소, 예산적자로 이어지는 적자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았다.

10여 년이 지난 2004년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상황은 괄목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그림 II-2]는 1960년 이후의 캐나다 연방정부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의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II-2]에서 알 수 있듯이 GDP 대비 부채비율은 1990년대 중반에 70%로 정점에 달했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만간 1960년대 수준인 4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4년도 예산에는 2015~16 회계연도까지 부채비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10여 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정건전화 목표가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개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캐나다

[그림 II-1] G-7 국가의 실질이자율과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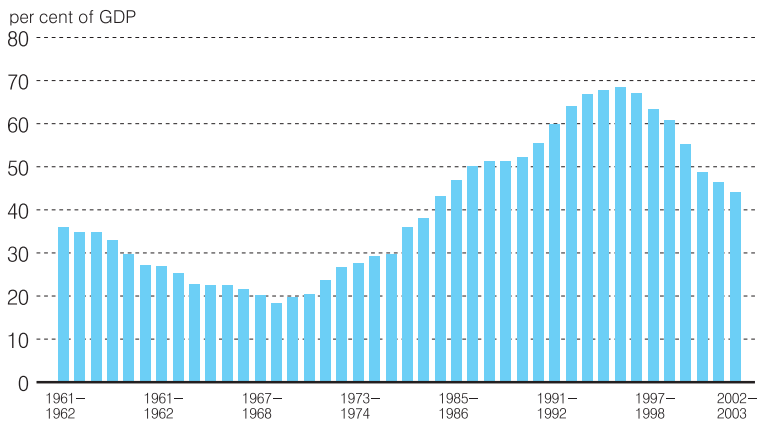


Interest rates are 1994 averages.
General government debt/GDP ratios are for 1994.

[그림 II-2] 캐나다의 GDP대비 연방채무비율 추이

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

(Public Accounts Basis)



자료: Budget 2004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출의 정비를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했는데 그 핵심은 범부처적으로 강한 예산제약을 만들고 그 제약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연방정부는 명확한 예산체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계획에서 산정하는 계획기간을 2개년도로 줄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산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의 재정위기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정책당국의 반응 및 그 효과를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왜 캐나다 정부가 예산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2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캐나다도 예외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는 실질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평균적으로 캐나다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의 4.5%에서 1980년대의 3%, 1990년대의 1.25%로 하향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수입의 증가가 여의치 않게 되고 이는 정부부채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외적인 요인들로 연방정부의 재정문제 인식의 부족과 해결의지의 부족, 지출감소 계획에 대한 각 부처의 저항, 총체적인 예산 절차에서의 통제능력의 부재 등도 재정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이 당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제도로 도입·시행되었던 ‘정책지출관리체계’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 결과로 1994년도를 예로 들면 60%가 넘는 GDP 대비 부채비율(Debt to GDP)에 이자율이 8% 이상이 되어, 지속적으로 이자지급의 부담이 있었고 그 부담은 다시 재정적자로 이어져 정부부채가 증가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출의 정비를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했는데 그 핵심은 범부처적으로 강한 예산제약을 만들고 그 제약을 만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정부는 명확한 예산체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계획에서 산정하는 계획기간을 이전의 5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줄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산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재정건전성 개선의 동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9년 예산에 제시된 <표 II-1>을 보면, 1993~94 회계연도에서 1998~99 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총 42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수지의 순개선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수지개선의 요인으로서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 경제성장에 기인한 수입(세입)증가, 수입조정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수지악화의 요인으로서 1998~99, 1999~2000 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출행위들, 공공부채 이자의 증가, 1998~99 회계연도에 도입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세입증가가 직접적

으로 정부활동에 기인하지 않은 외부적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연방정부가 예산수지의 개선에 노력한 결과로 가시화된 것은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 154억달러였다. 약 5년간에 걸쳐 매년 평균 30억달러 정도를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연방정부의 일련의 목표, 전략, 집행, 평가로 이어진 의도적이고 계산된 재정건전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경제여건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면도 있었겠지만 연방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지출삭감 등 내부적인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II-1〉연방예산수지 변화의 제 요인들

	1993~94 to 1998~99 (억달러)
수지개선 항목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	154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입증가	378
일시적 수입조정	27
수입 집행의 순효과	0
소계	559
수지악화 항목	
1998, 1999 예산의 지출 집행	75
공공부채 이자의 증가	34
1998~99 회계연도의 예비비 산정	30
소계	139
연방예산 수지의 순개선	420

자료: Budget 1999

자유당 정권 초기의 '예산' 계획에서는 고질적인 재정적자 성향을 근절하기 위해 GDP 대비 부채 비율(Debt to GDP)의 하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와 예산수입의 증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III. 예산제도의 변화

캐나다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다. 법정예산, 즉 입법에 의해 영구적인 지출권한이 부여된 예산 등이 정부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비록 5개년 이상의 예측전망을 발표하지만 '예산(The Budget)' 또는 예산계획에는 2개년도의 예측전망을 계획으로 발표한다.

주요 예산관련 문서로는 '예산', '예산서', '경제예산수정', '예산모니터' 등을 들 수 있다. '예산(The Budget)'은 재무부 장관이 2월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정부의 재정 및 경제운용 목표, 정책우선순위 그리고 해당연도에 도입하려고 하는 중요한 신규사업을 밝힌다. 따라서 '예산'에서는 예산수입, 프로그램 지출, 운영수지, 그리고 순공공부채 등의 제(諸) 변수들의 전망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예산서(The Estimate)'는 재무심의처가 작성하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승인 과정을 지원하며, 부처와 기관의 내년도 지출계획을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문서에는 기관별 프로그램별 지출의 세부사항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표시되며 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한편, 재무부는 대체로 가을에 변화된 대내외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하원의 상임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 '경제예산수정(The Economic and Fiscal Update)'을 보고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윤곽을 마련한다. '예산 모니터(The Fiscal Monitor)'는 매월 발행되는데 이를 통해 '예산'에 있는 주요 변수의 결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유당 정권 초기의 '예산' 계획에서는 고질적인 재정적자 성향을 근절하기 위해 GDP 대비 부채비율(Debt to GDP)의 하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와 예산수입의 증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1994~95 회계연도의 5.1%에서 1996~97 회계연도에는 3%로 낮추는 목표가 제시, 달성되었다. 1997~98 회계연도의 목표치인 2%도 초과 달성되었다.

명확한 목표 제시와 성공적인 목표 달성의 중기적 재정건전화의 확립은 이후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다. 과감한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를 추진하면서 재정적자의 감소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예산기획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캐나다 연

방정부의 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면서 성과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수정의 단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5개년 단위의 ‘정책지출관리체계’에서 2개년 단위의 새로운 ‘지출관리체계’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연방정부의 재정관련 약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된 새로운 ‘지출관리체계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는 2개년 순차체계(rolling system)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5개년 계획인 ‘정책지출관리체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보다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을 설치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정책지출관리체계’와 새로운 ‘지출관리체계’, 그리고 그 사이에 실행되었던 ‘프로그램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예산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효과적인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책지출관리체계

캐나다 연방정부가 1979년에 도입한 ‘정책지출관리체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기적 재정계획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예산담당부처인 재무부를 중심으로 정부예산의 지출한도를 5개년간에 걸쳐 설정하게 함으로써 정부지출의 총액을 제어할 유인을 가지고자 하였다.

‘정책지출관리체계’하에서 예산편성 과정의 기본구조가 된 것은 10개의 ‘예산분야(resources envelopes)’였다. 각 예산분야는 특정한 정책분야의 모든 지출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각 예산분야에는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다. 각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여러 부처의 지출을 포괄하였으므로, 각 ‘예산분야’의 관리는 해당분야에 관련지출이 있는 모든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된 여러 개의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지출관리체계’에 따르면, 어떤 한 분야의 모든 정부정책이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평가받기 때문에 재원의 재배분이 촉진될 것으로 보았다. 즉, 어떤 분야 내에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배분을 축소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조달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캐나다에서 1994년까지 적용되었던 ‘정책지출관리체계’는 각 부처들로 하여금 재정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질적으로 이 체계를 통해 기대하였던 재원의 재배분이 실패한 이유는 각 장관들이 자기 부처 내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재원을 재배분하려는 시도가 다른 장관들에게 이용되어 타 부처의 프로그램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

새로운 '지출관리체계(Expenditure Management System)'는 그 이전에 사용하던 5개년 계획인 '정책지출관리체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보다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을 설치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즉 적절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정책지출관리체계'의 실패 원인에 대한 정부보고서는 '정책지출관리체계'의 설계의 오류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책지출관리체계'는 장관들이 비록 자신의 부처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를 지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오류가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다른 부처의 프로그램에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의 부처의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가정들은 '정책지출관리체계'를 설계한 당국자들이 정치적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인, 각 부처 행태의 이기적 유인(incentive)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원인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중앙정책 유보분'이다. 이 유보분은 연중에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 제안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새로운 정책의 재원을 기존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정책 유보분에서 얻어내려고 주력하게 된 결과는 거시적 재정규율을 악화시켰다.

재무부가 특정 프로그램들의 지출삭감을 집권적으로 이루어내려고 시도했으나 당연히 해당 부처의 저항에 부딪혔다. 따라서 지출수준 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접근 방식이 전반적인 삭감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부 내에서 우선순위의 설정을 어렵게 하였다.

재정규율 유지에 있어서 보다 기술적인 문제로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복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사회비 부문에서의 지출증가 압력에 대비한 신중한 예산편성의 기제(mechanism)가 결여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 프로그램 평가

상당한 폭의, 목표를 둔 프로그램 지출의 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1994년에 도입된 '프로그램 평가'(Programme Review)이다. 이 절차는 1994년 2월에 발표된 '예산 1994'에서 천명되어 시작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되었다. 그해 봄에 프로그램 평가 사무처(Programme Review Secretariat)가 6개의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각 부처에 주어졌다. 그해 여름 평가가 이루어졌고

가을에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와 재정심의회(Treasury Board Secretariat), 그리고 선임장관위원회(Committee of Senior Ministers)가 프로그램 평가의 제안을 논의했다. 1995년 2월에 내각이 결과를 승인하고 의회에 발표함으로써 마감된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를 실질적으로 달성한 작업이었다.

프로그램 평가의 결과로 각 부처와 기관들에게는 지출삭감의 목표가 주어졌는데 그 폭은 50~60%에 달하는 것이었고 1995~96 회계연도에 시작하여 3년에 걸쳐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목표는 재무부와 재정심의회(Treasury Board Secretariat)가 과거 지출삭감 시도를 하면서 다년간에 걸쳐 각 프로그램별로 축적해 놓은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다. 부처와 기관들은 지출삭감을 위한 자신들의 계획을 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 그 계획이 비현실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정되어야 했다. 이와 같이 실행가능하도록 마련된 삭감계획이 내각 전체의 심의를 거쳐 1995년 예산에 수록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199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지출 삭감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요인들로 다음의 세 가지 정치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시기에 캐나다에는 재정위기(fiscal crisis atmosphere)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둘째, 재무부가 삭감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리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셋째, 정부의 출범 초기에 프로그램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부처 장관들이 부처의 이해에 고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새로운 지출관리체계

새로이 도입된 ‘지출관리체계(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의 재정건전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년 단위로 계속 교체 수정되는 재정목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의 설정, 운용예비비(operating reserve), 신중한 예산편성(prudent budgeting), 선순환예산동학(a positive fiscal dynamic) 등이 그것이다.

가.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재정목표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에서 주목되는 요소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이 해당연도의 예산과 차기연도의 예산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5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중기재정전망의 기간이 짧아진 것이다. 이렇게 예산전망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예산당국은 각 정부부처에게 가시적인 재정목표의 설정을 강화할 수 있었다. 즉, 바로 차기연도의 지출총액을 제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에서 주목되는 요소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이 해당연도의 예산과 차기연도의 예산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5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중기재정전망의 기간이 짧아진 것이다. 이렇게 예산전망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예산당국은 각 정부부처에게 가시적인 재정목표의 설정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시하고 그 성과에 기인한 평가와 수정이 이어진 것이다.

'지출관리체계'의 재정목표는 이전의 '정책지출관리체계'와 같이 예산수입, 프로그램 지출, 정부부채 이자, 적자, 그리고 정부순부채 등이다. 각각에 대한 목표치는 명목액수 또는 GDP 대비 비율로 표현된다.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의 초기 시행기인 1990년대 중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정수지로 'GDP 대비 재정적자'의 항구적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7~98 회계연도에 'GDP 대비 재정적자'가 감소하여 'GDP 대비 정부부채'의 감소가 발생하자 정부부채의 감소에 대하여도 강조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에 재정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이후에도, 2년 단위로 순차 교체되는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계속되어 왔다. 1999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흑자기조가 보다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자, 전문가들 중에는 그러한 흑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2년 단위보다는 5년 단위의 전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1999년의 '경제예산조정(Economic and Fiscal Update)'에서 5년에 걸친 흑자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산에는 재정목표가 계속하여 순차 교체되는 2년 단위로 제시되었고 정부도 재정목표에 대한 결정은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나.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

재정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장치로 25억~30억달러, 즉 총 예산의 1.3~1.5%에 해당하는 응급예비비가 도입되었다. 응급예비비는,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전지출이 예기치 못하게 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지출이 예측치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무부 장관이 응급예비비의 규모와 용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응급예비비로 인하여 의회에는 법정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가용한 최선의 전망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는 재정목표와 관련하여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즉, 이 응급예비비는 경제전망의 오류와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연도의 적자감축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 응급예비비를 적용하지 않고 그 액수 전체를 국가부채의 상환에 일괄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예산수지의 흑자기조가 견지된 후에도 연방정부는 사용되지 않은 응급예비비를 국가부채의 상환을 위해 계속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예비비의 규모는 1995~96, 1996~97 회계연도에는 25억달러였고, 그 이후 30억달러로 유지되어 왔다. 최근 2003~04 회계연도에 응급예비비의 사용이 있었는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했다.

다. 운용예비비(operating reserve)

이 항목의 목적은 개별 부처에서 기존의 지출 프로그램 비용이 예기치 못하게 상승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처들은 그러한 비용 증가를 내부의 재원 재배분을 통하여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들이 재무심의회(Treasury Board)에 운용예비비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운용예비비를 신청하는 부처에는 기존의 재원 재배분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재무심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에서는 운용예비비와 함께 존재하던 정책예비비(policy reserve)를 폐지하였다. 정책예비비가 각 부처들에게 여유자금으로 인식되어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통한 예산증가로 이어졌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의 폐지는 당연한 것이었다.

라. 신중한(prudent) 예산편성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은 예산편성에 선행하여 실시되는 중기경제전망에 보수적인 시각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경제상황의 현재와 향후 추이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취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낡은 예산수지의 변화를 최저치와 최고치로 예측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에서 사용하는 예측은 과거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상황에 대해 '신중한(prudent)' 가정을 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의 평균을 취하여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민간부문의 이자율에 대한 예측의 평균치에 0.5~1.9%p를 더하여 얻은 이자율을 계량경제모형에 대입하여 경제활동 수준에 대하여 보다 낮은 전망치를 얻는다. 이를 통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향은 예산편성에 선행하여 실시되는 중기경제전망에 보수적인 시각을 취한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에 대해 '신중한(prudent)' 기정을 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의 평균을 취하여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 선순환예산동학(a positive fiscal dynamic)

캐나다에서는 최근 두 번에 걸쳐 조세감면이 있었는데 2000년 6월 27일의 '7월 연방세 감면(July Federal Tax Reduction)'과 2000년 12월 14일의 '2001년 조세삭감(January 1st 2001 Tax Cuts)'이다. 두 번에 걸친 이러한 대폭적인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과거에 제시된 재정수지의 목표치가 유지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재정수지 목표의 견지는 정권 초기에도 나타났는데, 그때에는 적자감소의 시급성에 기인하였다. 반면, 최근의 이러한 견지는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최대 활용하여 예산흑자, 자금차입의 감소, 이자율 하락, 경기부양, 세입증가, 예산흑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예산동학을 상정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10월 '경제예산조정(Economic and Fiscal Update)'에서 제시한 건전재정화의 새로운 모토는 '건전한 예산운영은 단지 적자를 피하고 채무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고 저비용이면서 효율적인 정부서비스를 제공함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행 초기부터 노력한 '기존 프로그램의 가치를 계속해서 재검점하여 저우선 순위에서 고우선 순위로 재원이 배분되게' 했던 경험에서 기인한다. 계속해서 정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고 투명성과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함으로써 캐나다 국민에게 중기적으로 정책신뢰도를 높이는 등 고도의 책임예산을 시행하고자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바. 예산서의 부처별 사업계획서

저우선 순위에서 고우선 순위로 재원이 배분되게 하는 기초작업이 예산서의 부처별 사업 계획서이다. 이 계획서에는 각 부처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화시켜야만 지출 목표와 정부의 우선순위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매년 계획서에 당해 연도와 그 다음 두 해에 관한 것을 신도록 하고 있다.

주어진 지출규모 내에서 이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수록된다. 첫째, 정부의 우선순위와 부처의 현재 위치 및 그 전망에 견주어 본 중요한 변화와 지침 및 목표; 둘째, 중요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행동, 관련 비용 및 변경사항; 셋째, 프로그램의 결과와 관리전략의 평가를 위한 관련 목적(goals), 목표(targets) 및 성과 측도(performance measures), 중요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업무에 집중한 성과관련 정보 등이다.

부처와 기관들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무심의처가 검토하도록 제출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각 부처가 재무심의처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부처가 재정 및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구할 중요한 전략을 개관해 주는 부처별 프로그램 우선순위와 지출에 대한 전망은 하원의 상임위원회에 제공되는데 이것은 일반에 공개된다.

IV.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의 성과

새로운 '지출관리체계'의 시행 초기에 '2개년에 걸친 예산계획'의 주된 재정목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과감한 축소였다. 1996~97 회계연도에 GDP 대비 적자비율 3%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자, 예산수지 목표를 조정하였다. 그 일반적 원칙은 예산수입에서 프로그램 지출과 부채이자를 차감한 기초수지는 흑자운용기조를 유지하고, 이에 응급예비비를 차감한 예산수지는 수지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응급예비비의 사용이 없을 경우 이를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제도의 조정을 통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앞서 언급한 효과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예산 계획과 결과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서인 '예산(Budget)'과 '예산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알아보자. '예산'에서 설정된 목표치를, 그리고 '예산모니터'의 결과를 서너 가지의 주요 목표 변수, 즉 예산수입, 프로그램 지출, 운영수지, 순공공부채 각각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예산'에 담긴 예산수입을 보자. 매년 과거 결산과 향후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통상 5개년도의 예산수입 시리즈는 그 수치가 항상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에 기인한 조세수입의 증가가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2년에 계획된 예산수입액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중인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수입 목표치는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예상치와 실적치를 살펴보면 다분히 변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경기순환의 확장국면을 이루었던 과거 10년 동안 조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여 예산수입 계획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었다.

'예산'에 기록된 프로그램 지출의 추이를 보면, 1997년의 예산까지는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를 계획하였지만 1998년의 예산부터는 프로그램 지출의 증가를 계획하였다. 이는 물론

‘지출관리체계’의 시행 초기에 ‘2개년에 걸친 예산계획’의 주된 재정목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과감한 축소였다. 1996~97 회계연도에 GDP 대비 적자비율 3%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자, 예산수지 목표를 조정하였다. 예산수입에서 프로그램 지출과 부채이자를 차감한 기초수지는 흑자 운용기조를 유지하고, 이에 응급예비비를 차감한 예산수지는 수지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호경기에 따른 세입의 효과가 세출에 영향을 준 것이었다. 정권 초기의 5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지출억제가 선예산동학과 맞물려 그 이후의 지출증가를 유도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산수입과 프로그램 지출의 차이인 운영수지는 1993~94 회계연도와 1994~95 회계연도 사이에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었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새로운 ‘지출관리체계’를 통해 캐나다는 10여 년 만에 연방정부의 순공공부채 예상액을 6,027억달러에서 5,106억달러로 무려 900억달러 정도 감소시켰다.

순공공부채 예상액이 2004~05 회계연도에 다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응급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2004’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과 조속히 정상적인 관행, 즉 예비비의 불용을 통한 연방채무의 상환으로 회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비전을 담은 ‘예산’이 비록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매월 발표되는 ‘예산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매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3월에 발표되는 ‘예산모니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결산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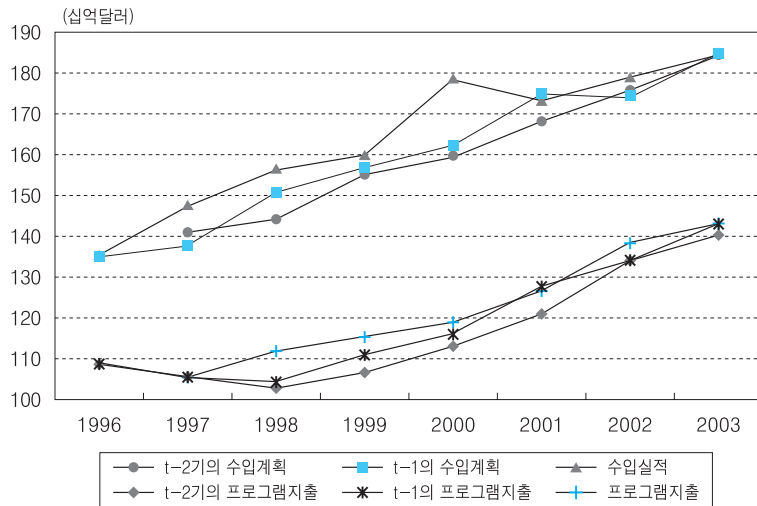
예산수입의 결산은 캐나다 경제의 확장국면을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지출에 대한 결산은 1998~99 회계연도와 1999~2000 회계연도 사이에 총지출의 변화방향이 역전되었다. 이는 프로그램 검토 당시의 전략, 즉 총지출의 감소와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의 효율성 제고 및 그것을 통한 캐나다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를 이룬다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선예산동학은 총지출 삭감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했던 1998~99 회계연도까지 삭감된 총액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저순위 사업에서 고순위 사업으로 재원을 재배분하면서 기대한 것이었다. 고순위 사업으로 재원이 집중되고 캐나다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수입의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여력에 힘입어 예산부서는 프로그램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예산과 예산모니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기적 관점에 입각한 재정의 계획과 실적을 예산수입, 프로그램 지출, 그리고 운영수지 등에 각각 살펴볼 수 있다. [그림 IV-1]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예산수입 및 프로그램 지출을 계획과 실적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 지출의 계획과 실적 사이의 차이가 예산수입의 계획과 실적 차이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담당부서인 재무부가 재정규율에 더 역점을 두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1] 캐나다 연방정부 수입 및 지출: 계획과 실적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예산수입 실적이 1997~98 회계연도부터 2002~03 회계연도 사이에 492억달러 증가한 반면 프로그램 지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343억달러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경제 여건이 좋은 시기에 이와 같이 지출삭감의 의지를 견지함으로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어 1996~97 회계연도의 71.1%에서 2000~01 회계연도에는 51.6%로 감소하였다.

2개년에 걸친 재정목표의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지출관리체계'는 신중한 경제전망에 기인한 보수적인 재정계획, 불확실성에 대비한 응급예비비의 확보, 사용되지 않은 응급예비비의 채무상환에의 사용, 저순위 사업에서 고순위 사업으로의 재원의 재배분을 가능케 한 성과주의의 실행 등 모든 정부에 시사점을 준다.

V. 시사점

일반적으로 중기적 재정계획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이다. 이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이 길수록 재정운용의 폭이 좀 더 넓어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좀 더 강한 제약에 기초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즉, 계획기간에 따라 효율성과 재정규율간의 역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통제력 약화를 거쳐 적자의 누적과 정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재정계획의 기간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중반의 캐나다 연방정부이다.

2개년에 걸친 재정목표의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지출관리체계'는 정부부채의 규모를 떠나 모든 정부에게 시사점을 준다. 즉, 신중한 경제전망에 기인한 보수적인 재정계획, 불확실성에 대비한 응급예비비의 확보, 사용되지 않은 응급예비비의 채무상환에의 사용, 저순위 사업에서 고순위 사업으로의 재원의 재배분을 가능케 한 성과주의의 실행 등은 재정건전성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캐나다 예산당국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추이를 중기적으로 파악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규율을 확보한 것을 살펴보았다. 중기적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홍보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것이 유효함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예산제도의 변화를 볼 때, 캐나다에서의 재정규율과 국민적 공감대의 확보가 재정건전화의 하나의 모범사례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기백, 『캐나다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1997. 10.

이명현, 「선진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공동정책연구-중기재정계획과 하향식 예산편성」, 한국조세연구원, 2004.

Babineau, Bernard and Nathanael Braun, “Forecasting Output Growth Over the Medium-Term,” Department of Finance working Paper 2003-08, 2003.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각 연도.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he Budget Plan*, 각 연도.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he Economic and Fiscal Update*, 각 연도.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he Fiscal Monitor*, 매월.

MacDonald, L., “Canada’s Policy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PEMS) & New Zealand’s Strategic Result Areas (SRAs): A Comparative Study, State Services Commission,” Working Paper No. 3, 2000.

OECD, “Budgeting in Canada,” PUMA/SBO(99)5/FINAL, 1999.

OECD,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No. 2, 2001.

공공부문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 노 옥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npark@kipf.re.kr)

유인체계에 대한 문헌에는 유인체계가 만들어 내는 반생산적인 행동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읽은 첫번째 책에는 어떻게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의 의표를 찌르고 성과급 체계를 악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로 가득 차 있었다(중략). 나는 피고용인들의 기발함에 놀랐다(중략). 시스템(성과급체계)이 조직 구성원들을 자극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행동을 자극하고 유발하고 있었다(Lawler, 1990).

I. 들어가는 말

최근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재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 하향식 예산편성,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재정적자의 위험성이 커지고, 미래의 재정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지출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지출의 성과를 측정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는 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의 범주에 들어간다¹⁾.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2000년도에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로 이름을 바꾸어 본격적으로 도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어로는 Result-Oriented Budgeting, Performance-Based Budget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입되기 시작했다²⁾. 2003년에는 22개의 전시행 부처가 30%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2004년에는 그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에는 4개 부처가 새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부처로 지정되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도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기획예산제도(PPBS, 1965), 목표관리제도(MBO, 1973), 영점기준 예산제도(ZBB, 1977)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별 성과 없이 끝났고, 1993년 정부성과와 결과에 대한 법령(GPRA)이 통과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최근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1980년대부터 영국(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 호주(Programme Management and Budgeting, 1983) 및 뉴질랜드(Public Finance Act, 1989)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정치적인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에서 추진중인 성과관리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만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예산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러나 성과지표 개발의 목적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참고될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정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라는 당위성 속에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준거로 삼는 것은 중요하지만, 외국에서조차도 아직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기보다는 실험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경제적 유인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유인의 도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조건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통제 위주에서 계획과 운영 중심의 예산편성체계로 가자는 움직임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지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자는 것이다.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근거해서 예산이라는 유인을 준다는 의미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부문에 성과평가체계에 근거한 유인을 도입하려는 일반적인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유인을 주지 않고 조직단위 또는 사업단위에 예산이라는 유인을 준다는 의미에서 비교적 약한 유인(low-

2)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킨다는 함의를 명시화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라는 명칭에 정책 추진 부서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정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라는 당위성 속에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 특히 공공부문에 경제적 유인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유인의 도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조건하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powered incentive)에 노출되는 셈이다³⁾.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과측정과 그에 따른 유인 제공이라는 틀에서 분석하고, 어떤 조건하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방식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의 시사점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의 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에 정부부문의 평가와 유인제공을 통한 혁신 프로그램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의 도입이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는 지나친 이상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성과에 근거한 강한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제Ⅲ장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측정과 경제적 유인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의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공공부문에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의 한계와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한 선결 조건들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원래 목적은, 개인이나 조직에 경제적 유인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의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유인체계가 도입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성과를 측정할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평가자들의 행동은 바뀌며, 예산이라는 추가적인 유인이 주어지므로 더욱 강한 유인이 주어지는 셈이다. 실제 성과지표 개발단계에서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그러하며, 뒤에서 소개될 미국의 직업훈련원과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주의 병원들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II. 경제적 유인의 효과와 한계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인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인들(특히 정치인들) 사이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이것은 무조건적인 진실이 아니다. 실제 민간조직에 있어서도 측정한 성과에 근거하여 강한 유인을 주는 곳은 흔하지 않다.

그러면 유인과 성과를 연결시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어떤 어려움이 잠재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성과측정에 잠재해 있는 불확실성 또는 부정확성이다. 측정된 성과가 개인이나 조직의 노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성과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과급(pay for performance) 제도를 강하게 실행하면, 개인이나 조직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개인이나 조직의 성향이 위험 기피적이라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상수준을 이전보다 높여 주어야 한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을 강하게 실행하는 비용이 바로 인상된 보수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Prendergast, 1999).

이렇게 성과급제도의 실행이 유인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은, (1) 측정된 성과가 개인의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2) 개인의 성향이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인 경우 성과급으로 강한 유인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성과급제도의 도입시 개인의 업무에 관계된 모든 측면을 계약에 명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이 업무 수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 몇가지 측면의 성과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부여하게 된다면, 나머지 측면의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 업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강한 성과급을 연계시키고, 그렇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약한 유인을 줄 수 있다. 각각의 업무를 놓고 보면,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한 개인이 여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유인체계를 실행한다면, 개인은 성과급이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Holmstrom and Paul Milgrom(1990)과 George Baker(1992)에 의해 알려진 multi-tasking problem 이다. 여러 측면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경우에, 부분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성과급이 주어진다면, 개인은 주어진 유인체계하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게임(gaming)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는 업무에서 성과급이 주어

공공부문에 성과에 근거한 유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공부문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또는 있어야 하고)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지는 업무로 노력과 재원이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성과를 측정하기 힘든 측면의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려면, 측정할 수 있는 측면의 일에 대해서도 약한 유인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라인의 책임자에게 생산량에 따라 강한 성과급을 준다면, 책임자는 기존의 공장시설을 적절한 관리 없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업은 약한 유인(예를 들어 고정급)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 모든 측면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조직이 하는 업무의 모든 측면에 대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상황에 대해 완벽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성과급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학에서는 계약의 불완전성(Incomplete Contract)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다.

III. 공공부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제II장에서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조차도 강한 경제적 유인을 이용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이유를 몇 가지 제시했다. 여기서는 성과평가에 근거한 강한 유인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에 성과에 근거한 유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1) 공공부문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또는 있어야 하고) (2)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과연 이 전제들이 공공부문에서 충족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공공부문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Smith, 1996). 조직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즉 누구의 목적을 달성시켜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특정 정부부처나 사업에 따라 여러 그룹이 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정 부처는 행정부의 수반에게 일차적

으로 책임을 지고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입법부, 사법부, 미디어, 그리고 사업에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 등의 여러 그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학적 용어로 정부부처는 여러 주인을 가진 공동의 대리인(Commom Agency with Several Principals)인 것이다(Dixit, 1997).

민간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이 문제가 명확한 편이다. 민간기업이 충족시켜야 하는 대상은 기업의 주인(주주)과 고객이다. 기업의 주인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고,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이들의 반응은 명확하다. 주주인 경우에는 경영진을 교체하든지 주식을 팔 것이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논의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외부경제를 창출한다든지, 기업이 독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기업의 주인이나 고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우는 공공부문에 비해 비교적 문제가 단순하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기업과 같이 좁은 의미에서의 책임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경찰 서비스의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 모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은 더욱 정의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범죄의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범죄인과 범죄혐의자, 일반 시민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그룹들은 각기 다른 것을 경찰에게 기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는 그룹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룹 내에서조차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 경찰의 경우는 이런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준다(Prendergast, 2002). 1998년 이전의 로스엔젤레스 경찰청은 경찰의 무례함과 인종주의적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방침을 바꾸어서 시민들의 불평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매년 0.05% 미만이던 경찰들의 정직이나 해고율이 1998년부터는 10%에 달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와 동시에 경찰의 체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범죄혐의자를 완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01년까지 마약사범의 체포율이 50%나 감소했다.

이런 부작용은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누구의 요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찰과 마주치는 그룹들은 경찰이 수사나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 없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들은 범죄인들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다른 점은, 비록 공공조직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측정
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나 경쟁에 근거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많이 체포해서 범죄를 줄일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 성과평가에 근거한
유인을 도입할 때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공공부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양할 수 있
다는 어려움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할 주요한 그룹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사용자(잠재적 사용자)
- 납세자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다른 공적인 조직들
- 고용자
- 일반 국민
- 위의 그룹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그룹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정부부처들은 단순한 경영이나 행정단위
가 아니다. 정부부처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Wilson(1989)은 정부
조직 내에서는 약한 수준의 유인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둘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다른 점은, 비록 공공조직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⁴⁾.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
나 상품의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나 경쟁에 근거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 서비스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가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성과를 측정한다면 성과에 근거한 유인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너무 이른 시간에 성과를 측
정한다면 의미 있는 측정이 불가능할 것이다.

4) 성과지표의 개발과 측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지 성과측정과 평가가 어
려운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논한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조직이 같이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합작한 투입과 성과(joint inputs and outputs)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가끔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는 랜덤(random)한 요소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상대평가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대상과 비교하여 그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독점에 가까운 기업이 아닌 경우에 이런 비교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는 특정의 서비스나 제품의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쟁을 통한 평가(yardstick competition)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⁵⁾. 다른 한 가지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방법인데, 이는 여러 기간에 걸친 성취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기마다 있을 수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성과에 근거한 경제적 유인의 도입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동기이다. 내재적 동기라 함은 외부의 유인에 관계없이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만족감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든지 봉사를 하는 조직의 경우, 종사자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공공부문의 업무 성격상, 종사자들에게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이나 사명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려진 현상으로, 외부의 유인(extrinsic incentive)이 내재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경제학에서도 경제주체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힘을 얻으면서, 내재적 동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reps, 1997; Benabou and Tirole, 2001)⁶⁾. 특히

5)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나 부처를 평가할 때,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각 기관이나 부처의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이런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 가능한 기관이나 부처가 아닌 경우는 각각의 특성을 통제된 조정된 평가지수를 쓰든지 아니면 상대평가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각 기관이나 부처의 특성이 통제된 조정된 평가지수를 쓴다는 것도 완전한 방법은 될 수 없다. 기대치로는 정확한 지수일지 모르나, 추정치에 따른 노이즈(noise)가 발생하기 때문이다(Dranove et. al, 2003).

6) Kreps(1997)는 두 가지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유인을 받으면서 일해온 사람은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일 자체의 만족보다는 경제적 보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시적인 경제적 보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은 조직 속에서 자신과 조직의 관계를 가족과 같은 관계 또는 시장거래 관계 중 하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명시적인 성과급이 주어지면 조직과의 관계를 시장관계로 인식하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명시적 성과급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과에 근거한 경제적 유인의 도입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성과와 경제적 유인을 연결시키는 경우,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조건하에서 외부의 유인이 내재적 동기를 저해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공공부문에서의 내재적 동기 감소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개인의 성과와 경제적 유인을 연결시키는 경우,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 조직단위의 성과와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례도 있다(Courty and Marschke, 1997).

IV. 경제적 유인 도입의 부작용 사례들

미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의 경우, 직업훈련원의 성과에 따라 예산중가가 보상으로 이루어졌고, 직업훈련원을 거쳐간 사람들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있어서 공공부문에 도입한 유인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Courty and Marschke(1997)와 Heckman and et. al(199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훈련원을 거쳐간 사람들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했더니, 훈련원에 훈련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질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즉, 취업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훈련원에 받아들여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cream-skimming’이라고 불린다⁷⁾. 또, 직업의 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시키는 데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그 결과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간과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훈련자들의 취업 또는 취업실패 결과를 보고하는 시점도 조절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실적 기준으로 취업률이 일정 수준만 넘으면 되므로, 취업자 수가 이미 목표에 다다랐을 경우 나머지 취업자들의 수는 차기연도로 넘겨서 보고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과연 많은 평가정보의 공개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자. 최근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경우, 환자들을 위해, 각 의사들과 병원의 관상동맥 바이패스(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의 사망률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 결과, 한

7) 만약 취업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이런 행동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있다면, 이런 행동은 그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연구(Dranove and et. al, 2003)에 의하면, 병원들이 중환자에 대한 치료를 기피하고 비교적 자기들이 치료하기 용이한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한다. 병원들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평판을 높이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의도가, 현실에서는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텍사스 주정부의 학력평가 시험합격률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텍사스 공립학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텍사스 주정부의 공립학교들의 성취는, 높은 표준시험 테스트(TASS: Texas Assessment of Academic Skills) 합격률로 인해 ‘Texas Miracle’로 불리웠다. 각 학교들에게 학생들의 시험 통과율에 근거한 유인을 준 결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Schemo and Fessenden, 2003)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기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Huston 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TASS와 Stanford test를 둘 다 치루었기 때문에, 과연 텍사스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나아졌는지 비교할 수가 있었다. TASS의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나아졌지만, Stanford test에 의하면 다른 주 학생들의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위해 TASS에 초점을 두고 교육시켰다(educate for test)는 것이다. 이는 성과를 특정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게 되면, 피평가자들은 그 기준에만 맞추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경제적 유인의 형태가 명시적이거나 강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구성원들은 반응한다. 미국의 직업훈련원의 경우, 주어진 유인은 성과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그 직업훈련원의 사업비를 인상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 인상된 예산은 인건비의 인상으로는 쓰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약한 형태의 유인이 주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성과기준을 쉽게 충족시키기 위해 유인에 대해 왜곡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 병원의 경우도,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 하나로 병원들의 반응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 셈이다. 정보공개가 가져올 기대 효과로 인해, 이미 병원들은 그 공개될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행동을 하였다. 그러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있어서도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와 예산의 배정이라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 충분히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반응이 원래 목적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을 조절하는 행동이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다. 직업훈련원의 경우는 훈련생의 수준을 바꾸었고, 병원의 경우는 환자의 종류를 바꾸었고, 학교의 경우는 교육하는 내용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산출이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요소를 바꿀 수 있는 조직의 경우는 산출이나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만을 하는 것은

경제적 유인의 형태가 명시적이거나 강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구성원들은 반응한다. 개인들은 성과기준을 쉽게 충족시키기 위해 유인에 대해 왜곡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한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을 조절하는 행동이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공부문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축적과 공개가 필수적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성과평가나 정보공개로 통한 유인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결과를 분석 가능하게 한 것은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원의 경우는 훈련생들의 특징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취업률, 취업기간 및 임금 등과 같은 정보가 축적되어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공립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시험성적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였다. 이러한 정보가 없이는, 공공부문 평가제도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평가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나,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는 빠른 시간 내에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는, 더욱 긴 시간에 걸쳐 축적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과평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공개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V.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한계와 선결조건

이상과 같이 성과에 근거한 유인의 일반적인 한계와 공공분야에의 적용시의 추가적인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에 근거한 유인을 도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만들어 성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정부부처나 재정사업에 대한 목표와 지표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정부사업과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의 구성이 다양하고, 바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진과정에서 또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가 예산배정에 있어서 개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목표와 지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도록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지표에 근거한 측정결과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관계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특히 산출지표가 아니라 결과지표에 중점을 두면, 해석의 문제에 가치판단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지금 현재의 조직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지표를 이용한 성과측정을 하는 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분석함으로써 보완책을 고안해 나가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소유주가 조직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비교적 신속히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는 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에는 주인(residual claimant)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순환보직제하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부작용이 초기에 신속히 개선될 확률이 낮다. 그러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모니터할 인력과 조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업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바람직한 성과 측정의 방법이나 예산과의 연계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지침이 아니라 이런 다양성을 고려한 지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부처나 사업담당자들이 적절한 지표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면, 이들이 지표를 개발하고 예산과의 연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이런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중앙 예산부처가 지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부처나 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지침이 제공되고 있어서 일선 부처에서 불안감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성과를 측정하고 경제적 유인을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만을 주목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며 측정된 성과와 예산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후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다른 일반적인 성과관리제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주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근거한 예산의 운용은 시도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정부부문의 사업들이 실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거역하기 힘든 당위적인 과제이다. 다만, 이러한 야심에 찬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투자가 따라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여러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은 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용과 부작용이 헤택

공공부문에 대해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추가적인 투자와 시행착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잘못된 제도의 도입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비효율성의 문제보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공공부문에 대해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추가적인 투자와 시행착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잘못된 제도의 도입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비효율성의 문제보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참고문헌

- Baker, George P., "Incentive Contract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0, No. 3, 1992, pp. 598~614.
- Benabou, Roland and Jean Tirol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Princeton University, Mimeo, 2001.
- Courty, Pascal and Gerald Marschke, "Measuring Government Performance; Lesson from a Federal Job-Training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pp. 383~388.
- Dixit, Avinash, "Power of Incentives in Private versus Public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pp. 378~382.
- Dranove, David, Daniel Kessler, Mark McClellan and Mark Satterthwaite, "Is More Information Better? The Effects of "Report Cards" on Health Care Provid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1, No. 3, 2003, pp. 555~588.
- Heckman, James, Carolyn Heinrich and Jeffrey Smith,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Standards in Public,"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pp. 389~395.
- Holmstrom, Bengt and Paul Milgrom, "Regulating Trade Among Agent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 146, No. 1, 1990, pp.

85~105.

Kreps, David M.,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Incentiv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pp. 359~364.

Lawler, Edward E., *Strategic Pay: Aligning Organizational strategies and Pay System*, San Francisco: Jossey-Bass, 1990.

Prendergast, Canice, "Selection and Oversight in the Public Sector, with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as an Example," Mimeo, Chicago, 2002.

Prendergast, Canice, "The Provision of Incentives in Firm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VIII, March, 1999, pp. 7~63.

Schemo, Diana Jean and Ford Fessenden, "Gains in Houston Schools: How Real Are They?" *New York Times*, New York, N.Y.: Dec 3, 2003.

Smith Peter, *Measuring Outcome in the Public Sector*, London: Taylor & Francis, 1996.

Wilson, James, *Bureaucracy*, New York: Basic Books, 1989.

기획

기획 에드워드 프레스콧의 학문세계

- 2004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122.00	123.95	122.02	121.54	121.76
	480.29	484.13	-476.45	7.49	473.09
	207.87	209.53	206.2	0.96	204.76
	2,607.36	2,628.21	2,582.2	46.47	2,568.25
	212.28	213.97	215.46		209.10
	2,068.16	2,084.72	2,099.20	2,037.16	
	555.98	560.42	554.31	547.65	
	305.52	307.96	310.10	300.94	
	638.36	643.4	647.93	628.79	
	172.72	174	175.11	170.13	
	526.89	52	534.79	518.99	
	93.76		95.16	93.38	
	31.01		31.47	30.54	
	33.79		34.29	33.29	
	987.29		1,000.00	973.29	

에드워드 프레스콧의 학문세계



프레스콧



키들랜드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에드워드 프레스콧과 노르웨이의 핀 키들랜드가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수상 이유로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은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최적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에게 수학한 김 진 박사가 그의 학문세계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1. 서론

1995년 시카고 대학교의 루카스(Lucas) 교수가 단독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무렵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는 전년도인 1994년에 게임이론(Game Theory)의 세 거두 하사니(Harsanyi), 내쉬(Nash), 그리고 켈텐(Selten)이 공동수상했던 경험이 재현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그 이유는 루카스의 그림자와 같은 동료인 미네소타 대학의 에드 프레스콧(Ed Prescott) 교수가 공동수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로 자리를 옮긴 프레스콧 교수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의 또 다른 동료인

핀 키들랜드(Finn Kydland) 교수와 공동으로 200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은 동태거시경제학(dynamic macroeconomics)에의 공헌, 즉 경제정책의 시간일치성과 경기순환의 동인에 대한 두 학자의 공헌을 선정이유로 제시했다. 이 두 주요 과제 이외에도 많은 부문에 걸쳐서 ‘주어진 경제학적 문제를 정식화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풀이법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그(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업적은 그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창의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또한 새로운 거시경제학적 도구(tool)로써 제시된 ‘스토키, 루카스, 프레스콧’(Stokey, Lucas, and Prescott, 1989)의 교과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동태거시경제학(dynamic macroeconomics)에의 공헌, 즉 경제정책의 시간일치성과 경기순환의 동인에 대한 두 학자의 공헌을 선정이유로 제시했다. 이 두 주요과제 이외에도 많은 부문에 걸쳐서 ‘주어진 경제학적 문제를 정식화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풀이법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그의 연구업적은 그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창의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서는 지금도 기본적인 교전으로 애용되고 있다.

소위 프레스콧 사단의 우수성과 독창성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이 경제학계나 정책입안에 향후 미치게 됨을 볼 때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꽤 오래 전부터 그 선봉이라 할 팀 키호(Timothy Kehoe) 교수는 남미 국가들의 금융정책 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미국경제에 대한 진단에 프레스콧 교수와 동참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들과 연방준비은행 등에 포진한 그의 동료들은 ‘미시이론에 근거한 동태거시화폐모형’을 이용한 실천적 경제학을 실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천재성과 성실성으로 자신의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학문적 업적을 일궈낸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의 행적을 경력, 주요업적,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논문 및 저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경력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C. Prescott)은 1940년 미국 뉴욕주 글렌폴스 태생이다. 1962년 스왓모어 대학(Swarthmore College)에서 수학으로 학사를 취득하고 1963년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Western Reserve University)에

서 경영과학으로 석사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1967년 카네기멜론 대학교(Carnegie-Mellon University)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1980년까지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였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 1998~99 학사연도에 시카고 대학교에 있던 것을 제외하면, 줄곧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1980년부터 현재까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선임자문가 그리고 선임화폐정책자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캐리경상대학원(W. P. Carey School of Business)에서 캐리석좌교수(W. P. Carey Chair of Economics)로 재직중이다.

프레스콧 교수는 각종 경제학 저널의 편집인으로 활동하였고 여러 경제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의 결과 현재 국가경제연구이사회(NBER)의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에드 프레스콧과 노벨상을 공동수상한 핀 키들랜드(Finn Kydland) 교수는 1943년 노르웨이 태생으로 1973년 프레스콧 교수의 지도하에 카네기멜론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대학(UC Santa Barbara)에 재직하고 있다.

3. 주요 분야별 업적

프레스콧 교수는 경제학의 여러 면에 걸쳐 천재성을 나타냈다고 평가된다. 그가 다룬 주요 분야를 대략 살펴보면 정책의 시간일치성, 동태적 거시경제이론, 금융론, 경제발전론, 경기순환론 등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지적처럼 제일 중요한 연구는 경기순환 동력과 경제정책의 시간일치성을 분석한 것들이다. 이를 통해 경제연구, 특히 거시경제연구의 틀을 변모시켰고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에, 특히 그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두 개 모두 키들랜드 교수와의 공동저작으로 각각 1977년, 1982년에 발표되었다.

가. 경제정책의 시간일치성

1977년에 정치경제학저널(*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실린 키들랜드와의 공동논문(Rules rather than Discretion: The Inconsistency of Optimal Plans)은 최적정책의 시간불일치성을 다룬 것이다. 여러 시기에 걸친 정부 정책과 민간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다루는 ‘동태적 경제체계’(dynamic economic systems)를 수리적으로 모형화하는 데에 소위 최적제어이론(the optimal control theory)이 부적절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즉, 다기간에 걸친 자연적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다루는 최적제어이론이 다기간에 걸친 경제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은 게임(game)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민간 경제주체

들의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expectations)이다.

이 시간일치성(time consistency)에 관한 논문은 이론적으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한 1972년의 논문 등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1972년 논문은 불확실성하의 다기간 최적문제를 분석한 것인데, 불확실한 민간부문의 행위에 직면한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상황을 수리적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안정을 최적제어를 이용해 달성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을 실험을 통해 줄여나가면서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 때 최적제어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안정(stabilization)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experimentation) 간에 역의 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제 1977년에는 민간부문이 하나의 불확실성의 덩어리가 아닌 독자적인 경제주체로 도입되는데 그 결과는 최적제어이론의 부적절성이었다.

1977년 논문에는 두 개의 정책사례 시나리오가 논리의 이해를 위해 제시되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실업의 예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조세감면의 예이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여, 일치성을 갖는 단기최적정책이 전체적으로는 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적인 시사점은 근시안적인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량보다는 원칙에 근거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소위 합리적 기대가설로 표현되는 새교전학과 학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더 큰 정책효과성이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1970년대 세금, 저축률, 금융정책과 임금 등에 대한 동태적분석, 재정-통화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

최적정책의 시간불일치성을 다룬 논문은 다기간에 걸친 자연적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다루는 최적제어 이론이 다기간에 걸친 경제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은 게임(game)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expectations)이다.

어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경기순환이론-경제발전론

1982년 이코노메트리카(*Econometrica*)에 실린 키들랜드와의 공동논문(Time to Build and Aggregate Fluctuations)은 성장이론과 경기순환이론의 통합으로 경제시계열의 순환적 변이를 균형성장모델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존 연구의 주를 이루었던 균형성장모형에 '새로운 자본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간이 필요하다'는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경기순환이라는 단기적 현상과 경제성장이라는 장기적 현상을 균형이론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단순한 경제모형으로 미국경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calibration)하였다.

실질생산의 자기상관과, 변동하는 생산과 다른 거시변수들의 상관을 단순한 경쟁균형이론으로 설명한 이론적 쾌거였다. 이 또한 1968년의 과점이론, 1973년의 독점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적 시도를 거쳐 결실을 맺은 역작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흥행하였던 (미시적) 합리적 기대이론을 동태적 거시경제학에 도입한 여러 시도 중에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를 지나면서 에드 프레스콧은

자신의 제자 또는 동료인 키들랜드(Kydland), 한센(Hansen), 쿨리(Cooley), 키호(T. Kehoe) 등과 지속적으로 경기순환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국가별 비교로 그 요인들을 찾고 검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실물적 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s)이라고 명명되는 정치한 모형에 근거하여 경기변동과 성장과정에서 기술수준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거시경제학의 문제를 풀기 위해 최고의 수학적 도구인 미시이론, 특히 게임이론과 일반균형이론을 이용 또는 개량한 노력이 선행되었다. 소위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의 일부를 담당한 것이다.

다. 일반균형이론

프레스콧 교수의 연구는 거시경제학에 국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시경제학의 최전선에서 이론의 개발과 정치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 시작은 1972년 루카스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A Note on Price Systems in Infinite Dimensional Space)을 들 수 있다. 그 후 타운젠트(Townsend)와의 두 개의 논문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있는 경우의 후생경제학적 이론을

다른 매우 난해한 것이다.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를 이용한 분석을 주로 하는 프레스콧 류의 거시경제학에의 응용은 재귀적 접근법(recursive methods)으로 연결되어 현대경제학 기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일반균형이론은 주로 세 가지 접근법을 갖는다. 소위 애로우-드브루(Arrow-Debreu)균형, 전개형(sequential)균형, 그리고 재귀적(recursive)균형이다. 그 중 프레스콧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재귀적 균형으로 문제를 재해석하고 특히 이 균형개념을 사용한 측정(calibration)을 주로 행한다. 이 재귀적 균형개념을 이용한 측정은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화폐경제학, 산업조직론 등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스토키, 루카스, 프레스콧’(1989)의 경제학 교과서는 위의 세 가지 균형개념을 이용하여 고전적인 성장모형인 솔로우(Solow)모형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후생경제학 제 1정리 및 제 2정리의 거시적 확장에 이르렀다. 재귀적 균형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기초적 입문서라기보다는 거시경제학의 매뉴얼로서 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키호(Kehoe)와 레빈(Levine)과의 공동논문이 불확실성에까지 그 논리를 발전시킨 수작이라는 면에서 그 천재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균형이론적 시각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사고의 풍부함에도 놀랄만하다.

라. 화폐금융론 및 기타

일반균형이론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대

표적인 분야는 화폐이론 분야로 그 주요활동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서의 선임자문가로서이다. 이를 통해 은행 등의 금융부문에 대한 관심과 대대적인 연구활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동료로서 메라(Mehra), 존 보이드(John Boyd), 그리고 엘렌 맥그래튼(Ellen McGrattan)을 들 수 있다.

메라와의 1985년 논문(The Equity Premium: A Puzzle)은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는 최근의 엘렌과의 2003년 논문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었다. 미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퍼들 논란은 메라와의 논문 이후에 많은 후학에 의해 다양한 접근과 수치로 전개되었다.

종과의 여러 논문에서는 금융론의 난해한 이론과 금융시장의 실제 사이의 해묵은 괴리, 즉 이론적으로 최적이지 않은 단순임대차계약이 왜 현실에서 많이 관찰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등 현실을 설명하려는 노련한 이론가의 집념을 볼 수 있다.

1992년의 논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은 측정 또는 회귀를 통한 실증 분석의 또 다른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경기순환, 경제성장, 은행, 파생상품 등의 분석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4. 인간적 측면

프레스콧의 천재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른 인간관계에서의 호불호는 다소 과장적이다. 다분히 내성적이고 소탈하다고 할 수 있는 그의

프레스콧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재귀적 균형으로 문제를 재해석하고 특히 이 균형개념을 사용한 측정(calibration)을 주로 행한다. 이 재귀적 균형개념을 이용한 측정은 공공경제학, 노동경제학, 화폐경제학, 산업조직론 등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성격은 그를 둘러싼 적지 않은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자로서의 고결성(integrity)을 유지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다.

프레스콧 교수는 거의 매년 박사과정 1년차 수업의 1년짜리 거시경제학 코스의 사분의 일을 수업한다. 그 수업은 정리된 체계를 배우는 종류가 아니다. 학생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하고자 하는 발견적(heuristic) 학습법을 사용한다. 첫 수업에서 국민계정에 대한 계산 및 실증분석을 다루는 그의 수업은 기업행위, 균형가격 및 균형개념, 후생 및 결과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독특한 사고훈련과정이다. 물론 이러한 발견적 학습법은 그의 동료인 키호 교수의 정돈된 강의에 의해 상호보완된다. 회고하건대 이 두 교수의 수업은 의도적인 상승작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수업 이외에도 프레스콧 교수는 그의 제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데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비공식적인 장치가 있다. 먼저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해피아워(Happy Hour) 시간을 들 수 있는데, 몇몇 교수와 학생들 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논쟁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성된다. 또한 토론을 전제로 한 독서모임(Book Club)은 큰 시각을 갖기 위해 도입된 배움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프레스콧 교수는 자신의 지도학생들의 구직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기로 유명하

다. 이는 그의 제자이면서 동료인 학자들을 세어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서로간의 상호유익은 말할 필요가 없다.

5. 저서 및 논문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는 적어도 경제학과 관련하여서 150 여개의 논문 및 보고서를 탐 저널 등에 게재하였고 몇 권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의 저서 및 논문을 각 분야별로 최근작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기순환과 경제발전(Business Cycles and Economic Development)

“Capacity Constraints, Asymmetries, and the Business Cycle,” with G. D. Hansen, accepted, *Review of Economic Dynamics*.

“Non-Convexities in Quantitative General Equilibrium Studies of Business Cycles,” forthcoming in *Frontiers of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edited by T. N. Srinivasan.

“Prosperity and Depre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1-15, May

- 2002.
- “Malthus to Solow,” with G. D. Hansen,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1205–17, September 2002.
- “Introduction: Great Depressions of the 20th Century,” with T. J. Keho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1), 1–18, January 2002.
- “The 1990s in Japan: A lost Decade,” with F. Hayashi,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1), 206–35, January 2002.
- “Monopoly Rights: A Barrier to Riches,” with S. L. Parente, *American Economic Review* 89(5), 1216–33, December 1999.
- “Needed: A Theory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9, 525–52, August 1998.
- “Barriers to Technology Adoption and Development,” with S. L. Paren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 298–321, April 1994.
- “Post-War U.S. Business Cycles: A Descriptive Empirical Investigation,” with R. Hodrick,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9(1), 1–16, February 1997. Discussion Paper 451, Northwestern University, 1980.
- “An Equilibrium Analysis with Idle Resources and Varying Capacity Utilization Rates,” with T. F. Cooley and G. D. Hansen, *Economic Theory* 6(1), 35–50, June 1995.
- “Recursive Methods for Computing Equilibria in Business Cycle Models,” with G. D. Hansen, Chapter 2 in T. F. Cooley, ed., *Frontiers of Business Cycle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39–64, 1995.
- “Did Technology Shocks Cause the 1990–1991 Recession?” with G. D. Hansen,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280–86, May 1993.
- “Hours and Employment Variations in Business Cycle Theory,” with F. E. Kydland, *Economic Theory* 1, 63–82, January 1991.
- “Response to a Skeptic,”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10, 28–33, Fall 1986.
- “Theory Ahead of Business Cycle Measurement,” in K. Brunner and A. H. Meltzer, eds., *Real Business Cycles, Real Exchange Rates and Actual Policies*,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25, 11–44, Autumn 1986. Revised version reprinted in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10, 9–22, Fall 1986.
- “Time to Build and Aggregate Fluctuations,” with F. E. Kydland, *Econometrica* 50, 1345–70, November 1982.
- “A Competitive Theory of Fluctuations and th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of Stabilization Policy,” with F. E. Kydland, in S. Fischer,

ed., *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ic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9–98, 1980.

나.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

“Lotteries, Sunspots, and Incentive Constraints,” with T. J. Kehoe and D. K. Levine, *Journal of Economic Theory* 107(1), 39–69, November 2002.

“Introduction to Sunspots and Lotteries,” with K. Shell, *Journal of Economic Theory* 107(1), 1–10, November 2002.

“Valuation Equilibrium with Clubs,” with H. Cole, *Journal of Economic Theory* 74, 19–39, May 1997.

“The Plant and the Firm in General Equilibrium Theory,” with A. Hornstein, in R. Becker, M. Boldrin, R. Jones, and W. Thomson, eds., *General Equilibrium, Growth, and Trade II: The Legacy of Lionel McKenzie*, Academic Press, 393–410, 1993.

“Classical Competitive Analysis of Economies with Islands,” with J. –V. Rios–Rull, *Journal of Economic Theory* 57, 73–98, June 1992.

“Insurance Contracts as Commodities: A Note,” with A. Hornstein,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 917–28, 1991.

“General Competitive Analysis in an Economy

with Private Information,” with R. Townsend,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5, 1–20, February 1984.

“Pareto Optima and Competitive Equilibria with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with R. Townsend, *Econometrica* 52, 21–45, January 1984.

“Recursive Competitive Equilibrium: The Case of Homogenous Households,” with R. Mehra, *Econometrica* 48, 1365–80, September 1980.

“A Note on Price Systems in Infinite Dimensional Space,” with R. E. Lucas, Jr.,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3, 416–22, June 1972.

다. 화폐금융(Money, Banking, and Finance)

“Average Debt and Equity Returns: Puzzling?” with E. R. McGrattan,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392–97, May 2003.

“Is the Stock Market Overvalued?” with E. R. McGrattan,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20–40, Fall 2000.

“Banking i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Economics,” with J. Diaz–Gimenez, T. Fitzgerald, and F. Alvarez,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6(3/4), 533–60, July/October 1992.

“Evaluating the Welfare Effects of Alternative

Monetary Arrangements,” with A. Imrohoroglu,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15, 3–10, Summer 1991. Revision of “Seigniorage as a Tax: A Quantitative Evaluation,” with A. Imrohoroglu,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3(3), 462–75, August 1991.

“A Multiple Means of Payment Model,” in W. A. Barnett and K. J. Singleton, eds., *New Approaches to Monetary Economics*,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51, 1987.

“Financial Intermediary–Coalitions,” with J. Boyd, *Journal of Economic Theory* 38, 211–32, April 1986.

“The Equity Premium: A Puzzle,” with R. Mehr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5, 145–61, March 1985.

라. 방법론과 정책(Methodology and Policy)

“Business Cycle Theory: Methods and Problems,” Chapter 12 in L. P. Punzo, ed., *Cycles,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London: Routledge, 283–300, 2001.

“The Computational Experiment: An Econometric Tool,” with F. E. Kydlan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1), 68–86, Winter 1996.

“The Discipline of Applied General Equilibrium,”

with T. J. Kehoe, *Economic Theory* 6(1), 1–12, June 1995.

“Economic Growth and Business Cycles,” with T. F. Cooley, Chapter 1 in T. F. Cooley, ed., *Frontiers of Business Cycle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38, 1995.

“The Econometrics of th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to Business Cycles,” with F. E. Kydland,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93(2), 161–78, 1991.

“Rules Rather Than Discretion: The Inconsistency of Optimal Plans,” with F. E. Kydlan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473–91, June 1977.

“Should Control Theory Be Used for Economic Stabilization?” in K. Brunner and A. H. Meltzer, eds., *Optimal Policies, Control Theory and Technology Exports*, Amsterdam: North–Holland, 13–38, 1977. (Carnegie–Rochester, v.7.) “A Rejoinder,” 101–02.

마. 기타 주요논문

“Market Structure and Monopoly Profits: A Dyna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Theory* 6, 546–57, December 1973.

“The Multi–Period Control Problem under Uncertainty,” *Econometrica* 40, 1043–58, November 1972.

“Collusion in Oligopoly: An Experiment on the Effect of Numbers and Information,” with T. Dolbear, et a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 240–59, May 1968.


바. 기타 주요논문 8편 및 기타 31편의 논문

사. 저서

Great Depressions of the 20th Century, co-edited with T. J. Keho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1), 2002.

Applied General Equilibrium Symposium, co-edited with T. J. Kehoe, *Journal of Economic Theory* 6(1), 1995.

Recursive Methods in Economic Dynamics, N. L. Stokey and R. E. Lucas, Jr., with the collaboration of E. C. Prescot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Contractual Arrangements for Intertemporal Trade, co-edited with N. Wall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jpf.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 정책

미국, 기업이익 증대 불구 세수입은 2000년 수준에 못 미쳐

- 미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1년간의 건실한 경제성장 과 기업이익 증대에도 불구하고 2004 회계연도의 미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부시 대통령 취임 전인 200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함
- 이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연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주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소득이나 기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 모두 2000년 당시보다 적게 나타남
- 개인소득은 2000년에 비해 15% 증대되었으나 개인 소득세는 2000년의 1조달러에서 2004년에는 8,100억달러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기업이익은 약 40% 늘어났으나 법인세 수입은 180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CBO는 2004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30일 까지 연방 재무부가 거둬들인 세수입에 기초해 연방 재

정적자가 4,1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 지난 4년간의 미 연방정부의 재정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임
-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군사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이라크전쟁 여파이기도 하지만 국방부의 군현대화 프로젝트 때문이기도 함
- 2000년 이후 군사지출은 약 40% 늘어나 2004년에는 4,370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 군사지출은 2004년 한 해 동안에만도 12.3% 증가해 다른 사업예산에 비해 세 배나 빠른 증가율을 나타냄
- 그러나 더욱 두드러진 현상은 2000년 이후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2000년 당시 주식시장 거품이 사라지면서 세수입이 크게 감소된 이후 2001년의 경제후퇴 및 고실업률이 이어지면서 세수입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음
- 한편, 미국의 연방 세입 및 세출은 관례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음
- 평균적으로 연방지출은 전체 국가경제의 18.5%를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부시 대통령 임기중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국내총생산의 약 20%를 점하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세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낮아짐
 - 2004년 총 세입은 전체 경제의 16.3%를 차지했으나 이는 지난 40년간을 통틀어 가장 적은 비율임
- 〈국회도서관, 일일외국신문정보 10/8〉

일본, 환경세 도입 관련 논란

- 최근 일본에서는 환경성이 화석연료에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제부처 및 산업계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일 환경성은 에너지 소비억제와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내년부터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환경세를 부과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안을 마련중
- 이와 관련, 경제부처와 산업계 동향을 보면
 - 경제산업성은 환경세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 일 경단련과 석유·철강연맹 등 경제·산업계도 환경세 도입시 심각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적극적인 반대입장 표명
- 이러한 논란은 환경성이 교토의정서 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 일방적으로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구체안이 마련되더라도 조기 채택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

〈국정원, 국제경제 10/11〉

美, GDP 대비 세수비율 하락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적자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까지 감소함에 따라 미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미국의 GDP 대비 세수비율이 25.4%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 비율은 지난 2000년 29.9%에 달했으나 2002년 26.4%로 줄었고 지난해 또다시 25.4%까지 추락
-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로서 영국의 GDP 대비 세수비율은 2002년 35.8%에서 작년 35.3%로 하락
- 다만 OECD는 지난해 OECD 국가 평균 전체로는 GDP 대비 세수비율이 2002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설명
 - 지금까지 통계가 집계된 OECD 23개국 중 13개국의 작년 세수비율이 증가했으며 아일랜드, 터키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세수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
 - 다만 OECD는 지난해 OECD 국가 전체의 GDP 대비 세수비율은 공개하지 않음
- OECD 국가 전체의 GDP 대비 세수비율은 지난 2000년 37.2%를 기록한 뒤 2001년 36.8%, 2002년 36.3%로 꾸준히 하락한 바 있음

〈edaily 10/21〉

프랑스 부자들, 벨기에로 대이동

- 프랑스의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이웃나라 벨기에로 이민을 가고 있다고 르몽드가 19일 보도

□ 르몽드는 “금리 생활자들이 많은 벨기에는 노동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벨기에 고급 주택의 주인이 된 프랑스 부자가 2천여명에 이른다”고 보도

○ 벨기에가 이처럼 이민 대상국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세금문제 외에도 고속철로 인해 파리까지 일일생활권 안으로 연결되는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풀이

□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섬유재벌의 상속자인 기슬랭 프루보스트는 ‘억만장자들의 거리’로 이름이 바뀐 브뤼셀 고급주택가에서 최근 750만유로(약 107억원)짜리 집을 사들였고 다른 프랑스 부자들도 옛날 영주들이 살던 대저택과 땅을 사들이는 데 가세했다고 함

○ 비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명단 가운데는 프랑스의 대형 유통회사인 카르푸와 오상, 다티 가문의 상속자 이름도 포함되어 있음

○ 르몽드는 이로 인해 벨기에 고급주택 가격이 최근 폭등했지만 파리의 고급주택에 비해서는 여전히 싼 편이라고 전함

□ 한편, 프랑스 현금자산의 유출도 점점 많아지고 있음

○ 벨기에로 이민간 리베르테 항공사의 전 사장 로트피 벨하신은 프랑스 시사잡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벨기에 은행권에 프랑스에서 이민간 사람들이 예치한 돈이 25억유로(약 3조 5,7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언급

□ 프랑스 예산당국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프랑스를 떠난 부유층 납세자 중 대략 16%가 벨기에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

○ 두 나라의 조세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4억 5천만유로(약 6,426억원)의 재산을 가진 프랑스 사람이 벨기에로 이민가면 1년에 75만유로(약 10억 7,0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중앙일보 10/20〉

멕시코, 2005년 관세인하 계획

-멕시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수립-

□ 멕시코 경제부는 무역활성화, 밀수 근절, 자유무역협정 활용, 비용절감을 목표로 ‘경제개발 강화전략’을 수립, 발표

○ 2005년부터 실시될 이 전략은 무역정책, 산업정책, 내수시장 정책, 기술 및 서비스 개혁 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짐

〈경제개발 강화 4대 전략〉

1. 무역정책

- 부적합한 관세 철폐
- 과세부담 축소
- 제품간 관세격차 축소
- 서류절차 간소화
- 사전수입허가제도 개선

2. 산업정책-자동차 및 운송, 전자 및 IT산업, 소프트웨어, 신발, 직물, 의류산업 농업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부문, 제철부문, 수출용 제조업, 화학, 항공, 농업, 건설, 관광 등에 집중

3. 내수시장 정책-국내 상업 현대화

- 물류개발
- 정부구매 확대
- 4. 기술 및 서비스 개혁 정책
- 고부가가치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

- 멕시코 경제부는 2005년에 관세조정, 반덤핑 관세 축소, 무역관련 절차 간소화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특히 자동차, 섬유, 의류, 신발, 철강부품관세를 전면 검토할 예정
 - 또한, 현재 500%에 달하는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현실화시킬 계획
 - 특히,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산 원사, 합성섬유, 의류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전수입승인제 등 무역규제 장치를 최소화할 예정
- 멕시코 정부는 전자, 소프트웨어,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신발, 수출용 제조업, 화학, 항공, 상업, 농업, 건설, 관광 등 12개 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을 적용할 예정
- 또한, 멕시코 내수시장 정책으로는 효과적인 구매 및 판매 시스템 도입, 정보통신기술 사용 확대, 물류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현대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음
- 멕시코는 이 4대 전략을 통해 멕시코 내 산업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2006년의 경우, 섬유 및 의류부문에 65만명의 고용증가, 전자 및 IT부문에 2만 7천명, 자동차 및 운송부문에 60만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산 원사, 섬유, 의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검토와 더불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에스테르 합성 필라멘트 등 현재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 제품도 함께 검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멕시코 정부의 관세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멕시코 관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

〈KOTRA, 경제무역정보 10/21〉

재정 정책

日, 옛 금화 팔아 나라 빚 갚는다? 재정적자 7,300조원

-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발행된 금화를 팔기로 결정
-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메이지(明治)시대부터 쇼와(昭和)시대까지 발행된 금화 32,683개를 팔기로 결정
 -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더글러스 맥아더의 연합군사령부(GHQ)가 보관하고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후 돌려받은 금화들이며 금화는 모두 1870년부터 1932년까지 발행된 것들임
 - 특히 매각 대상 금화 중에는 시중에서 100만엔(약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1932년 발행 '환상의 20만엔짜리 금화' 68개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금화가 모두 팔릴 경우 일본 정부는 수 십억엔의 매각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 일본 재무성은 연내에 모두 매각하기로 하고 인터넷 경매에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
-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나라 빚은 사상 최악인 729조 2,281억엔(약 7,29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6월말 현재 국채와 차입금, 정부보증금의 총액은 3월 말보다 3.7% 늘어났으며 일본의 나라 빚을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570만엔(약 5,700만원) 꼴이 되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은 '숨겨진 빚'까지 합하면 일본의 나라 빚은 총 1,000조엔(약 1경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

□ 일본의 국채 잔액은 역대 최고인 517조엔으로 3월말에 비해 15조엔이 늘어났음

□ 국채 증가 내용을 보면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 4조 8,000억엔 늘어난 반면 1년 이하 단기국채는 1조 6,000억엔에 불과하여 이는 일본 정부가 저금리일 때 장기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동아일보 9/26〉

美, 쌍둥이 적자 세계경제 부작용 우려..금리상승 요인

□ 중장기적으로 세계 금리는 50b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미국의 재정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어 미국 및 세계경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진단

□ 특히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임박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 및 경직적 환율제도로 당분간 쌍둥이 적자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장기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

□ 한은은 『미국 쌍둥이 적자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2004 회계연도 중 미국의 재정수지는 2,360억달러(GDP 대비 2.5%) 흑자에서 5,210억달러(GDP 대비 4.25%) 적자로 반전되었고 경상수지 적자도 4,134억달러(GDP 대비 4.2%)에서 6,048억달러(5.2%)로 악화되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적자가 2조 3천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대다수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개인소득세 감세 조치 연장, 국방비 GDP 대비 4% 수준 유지, 재량지출의 실질기준 대비 2% 상승, 고소득층의 세금회피를 위한 최소과세법 개정 등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5조~6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특히 재정적자는 1조 7천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테러와의 전쟁, 2001년 이후 경기침체, 주식시장 버블 붕괴에 따른 세수결손 등으로 2000~2004년 회계연도 중 GDP 대비 6.8%까지 확대되어 5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

□ 한은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단기적으로 미국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 및 수입 수요확대를 통해 미국과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풀이

□ 그러나 한은은 중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투자와 저축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미국 및 세계의 실질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평가

○ 실제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늘어난다면 미국의 실질금리는 23~60bp 상승할 것으로 추정

○ CBO도 향후 5년간 미국의 공공부채가 15%p 늘어날 경우 세계 실질금리는 50b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한은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세계 장기금리 상승을 촉발할 경우 소비와 자본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출량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

□ CBO는 2004년 재정적자로 2009~2013년중 미국의 GDP가 0.5~1.5%p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IMF는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이 확산과정을 통해 2015

년까지 세계 실질생산을 2%p 정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적자폭도 감세정책 등에 따른 미국의 수입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수준으로 확대

□ 환은은 달러화가 2001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직적인 환율운용으로 가격변수로서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 기능이 크게 약화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고 풀이

□ 이에 따라 환은은 미국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불안 해소, 내수진작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압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

□ 환은은 미국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의 재조정을 위해서 미국과 세계 각국의 정책조화 및 협력이 필수적이며 일정 부분 교역상대국들의 비용분담도 불가피하다고 진단

□ 특히 아시아 각국은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적인 불균형 조정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

〈연합인포맥스 10/3〉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 실태

□ 최근 미·일·독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해 퇴직연령 상향조정·연금기금 투자 확대 및 사적연금 비중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의 개혁정책을 추진중임

□ 유럽

○ 독일은 2002년부터 공적연금의 재원 부족에 대비해 기업·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해 왔고, 연방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를 수급체계에 반영한 연금개혁안을 의결

○ 영국은 2000년 이후 모든 연금 수급자들이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축 여력이 있는 근로자들은 안전한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혁을 지속

○ 이탈리아 하원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해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목표하에 2008년부터 장기 근무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연금법을 개정

○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성장 둔화에 대한 대비와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연금수령 연령(만 61~70세)에 따른 차등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보장 연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연금정책을 마련

○ 노르웨이는 2001년부터 공적연금 조성에 대한 국가 부담을 줄이고 고용주·근로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중

□ 미국·일본·호주

○ 미국

- 1983년 물가연동 방식으로 공적연금 급여 증가를 억제하고 연금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한 이래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금재정 안정화를 적극 모색하면서, '개인계정 제도'를 도입해 연금지급 감소분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 일본은 보험료 인상·급여수준 하향(2023년까지 현 수준의 50%로 감축)·국고부담의 점진적 증대(1/3 → 1/2)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마련, 올해 10월부터 시행중

* 국민연금·후생연금·공제연금 등 공적연금의 일원화

작업과 함께 연금 납부율 제고(미납률 40%)를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이 향후 과제

- 호주는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증가한 재정흑자(올해 37억달러 추정)를 향후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연금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만간 ‘연금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

〈국정원, 국제경제 10/12〉

중국, 금리인상 이유는

-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1%를 기록해 전분기의 9.6%에 비해 낮아졌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후퇴했음에도 인민은행이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중국 정부가 28일 전격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아직 충분히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 과잉투자가 더이상 지속될 경우 경착륙 우려가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전력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중앙은행에 금리인상 압력을 높인 것으로 보임
- 또 경제성장률이 3분기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문가 예상수준인 8.9%를 상회한 데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밝힌 7%선을 크게 웃돌자 경제 연착륙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
- 인민은행은 이날 1년 만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0.27%p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폐지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번 중국의 금리인상은 지금까지 경제 연착륙을 위해 취했던 정책과 달리 시장의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라는

사실에 의미가 있음

-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동차와 시멘트, 부동산, 철강 등 일부 과열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같은 과열 억제책은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시장중심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시장중심으로 나가는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추가인상 가능성 있어

-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 아시아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왕 이핑은 “중국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지만 투자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인상에 이어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사실 중국의 금리인상 필요성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SDRC)의 이코노미스트인 리투리핑은 중국 정부가 투자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과 세금부과 등 시장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발표
- 그는 또 투자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금리인상과 세금부과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
- 모건 스텐리의 앤디 시에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과열 억제책이 지금까지 제한된 효과를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취할 것을 주문
- 한편,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라 민간소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유지하

고, 투자 억제에 따른 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의존해 온 부분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

□ 또 당분간 증시는 약세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이사회(FRB)가 지난 6월 연방기금 금리를 상향 조정한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가파르게 하락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머니투데이 10/29〉

EU, 고유가로 내년 성장약간 둔화전망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 고유가와 유로화 상승 등으로 인해 내년에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추계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유럽 경제는 올해 세계경기 회복과 수출호황에 힘입어 예상 외로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밝힘

□ 집행위는 이에 따라 당초 춘계보고서에서 밝혔던 올해 유로권 12개국 평균 성장 예상치보다 0.4%p 높은 2.1%로 수정하는 한편 25개 EU 회원국 전체의 성장률 예상치도 2.5%로 높였음

□ 집행위는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경기와 수출둔화 때문에 내년 유로권 성장 전망치를 2%로 춘계보고서 때에 비해 0.3%나 낮췄으며 또 EU 전체 성장 예상치도 2.3%로 하향 조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성장률이 각각 2.2%와 2.4%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위는 밝힘

□ 그동안 집행위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EU 경제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고유가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힘

□ 요아킴 알루미나 집행위원은 유가 외에도 유로화의 대 달러 가치가 다시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도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유로권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언급

○ 알루미나 집행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환율을 1유로당 1.24달러로 잡고 작성한 것이라면서 유로화 상승이 달러로 표시되는 석유의 수입가격을 낮춰주는 효과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힘

○ 그는 또 올해 평균 유가는 배럴당 38달러, 내년엔 45달러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EU 성장률이 0.2% 낮아진다고 설명

□ 한편 집행위는 올해 동구권 등 신규 가입국을 포함해 10개국이 신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들과 관계 있다고 분석

□ 집행위는 그러나 기존 회원국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5개국이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적자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

○ 집행위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우려하면서 독일은 올해 3.5%, 내년엔 3.4%의 재정적자를 내며 4년 연속 규정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

□ 집행위는 또 올해 유로권 60만개를 포함해 EU 전체에서 신규 일자리가 80만개가 생겼으며 내년엔 그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현재 유로권 8.9%, EU 전체 9.1%인 실업률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2006년에야 비로소 낮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

□ 이밖에 유가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률이 2.1%로 억제 목표치(2%)를 약간 웃돌았으나 내년엔 1.9%로 목표치를 살짝 밑돌 것이라고 집행위는 예측

〈연합뉴스 10/27〉



정책흐름

1.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2.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3.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간 연장
4. 금년도 종합토지세 2조 1,168억원 부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이 자료는 2004년 11월 6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보유세 현황

□ 부동산 관련 지방세

거래단계(광역시·도세)	⇒	보유단계(시·군·구세)
○ 취득세 2%		○ 재산세 0.3~7%
○ 등록세 3%		○ 종합토지세 0.2~5%

[’03년 세수 : 13조원]

[’03년 세수 : 2.5조원]

□ 문제점

- 거래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음
 - 보유세에 의한 과다보유억제 등 투기규제 기능 미흡
 - 거래세 부담이 높아(취득액의 5.8%) 원활한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의식하여 과표를 낮게 책정하거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낮춰주고 있음(⇒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 요인)
- 시·군·구(도시·지방) 간 세수의 불균형 심화(부·빈익빈)
 - 서울 강남구 : (’03)1,340억원 → (’04)1,900억원 (+560억원)

- 강원 인제군 : (’03)7.2억원 → (’04)6.8억원 (△0.4억원)

○ 지난 7월 재산세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보유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는 현행 과세방식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움

* 〈사례1〉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세금이 많음

	면적	기준시가	’03 세액	’04 세액
· 대전 APT	75평	3.2억원	155만원	79만원
· 강남 APT	26 "	3.6 "	9 "	17 "

* 〈사례2〉 토지면적이 넓은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세금이 많음

	면적	시가	’03 세액	’04 세액
· 서초 APT	44평	9억원	23만원	89만원
· 노원 단독	94 "	9 "	394 "	432 "

II. 개편안 주요내용

1. 개편 목적

□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 세부담의 공정성 확보

□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

-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함으로써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 유도

□ 지역균형발전지원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2. 개편 기본골격

□ **【보유세 강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함

□ **【과세체계】** 재산가액(시가)에 상응하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책정기준과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함
 - ※ 현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 **【종합부동산세 신설】**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함

- (1차) 시·군·구: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 (2차) 국 가: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

여 일정기준가액 초과분은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에 우선 지원

3. 거래세 완화방안

□ 금년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 1. 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춤

현행	개편안
취득세 2%(농특세 포함 2.2%) 등록세 3%(교육세 포함 3.6%)	취득세 현행대로 등록세 2%(2.4%)
5%(5.8%)	4%(4.6%)

□ 이에 추가하여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인하함

-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 앞을 합하면 거래세 인하폭은 $(1%+a)$ 가 됨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대로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계약서사본 제출제도가 시행되면

-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실거래 가격으로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되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을 개정하여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 과세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함

4. 보유세 개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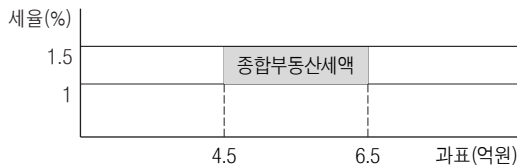
□ 부동산별 과세방법

	현 행	개 편 안	
		1차(시·군·구) 재산세	2차(국가) 종합부동산세
주택	○ 토지·건물 구분평가·구분과세 • 토지 : 종토세 (0.2~5%) • 건물 : 재산세 (0.3~7%)	○ 통합평가·통합과세 ○ 낮은세율로 재산세 과세	○ 소유주택가액 9억원 초과분은 높은세율로 과세
나대지	○ 종토세 0.2~5%	○ 낮은세율로 과세	○ 소유나대지가액 6억원 초과분은 높은세율로 과세
사업용 토지	○ 종토세 0.3~2%	○ 낮은세율로 과세	○ 소유토지가액 40억원 초과분은 높은세율로 과세
사업용 건물	○ 재산세 0.3%	○ 세율인하	(과세 안함)

<참고>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사례

○ 기준시가 13억원 아파트(과표는 기준시가의 50%인 6.5억원)

○ 서울(예시) : 재산세 1%, 종합부동산세 1.5%



세 액

<재산세> 과표 6.5억원 × 1% = 650만원

<종부세> 과표 2억원 (6.5-4.5) × 0.5% (1.5-1) = 100만원
 기준시가 9억원 ← 중부세율 ← 재산세율

<합 계> 750만원

□ **【세목의 명칭】** 현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하고 있으나,

-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하고
-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합

□ 보유세 과세표준

현 행	개 편 안
○ 주택 :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 • 토지 : 공시지가 × <u>지자체적용률</u> (평균 39.2%) • 건물 : <u>신축원가</u> × 각종지수 × 면적 (㎡당 18만원)	○ 주택 : 토지·건물을 통합평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시가의 70~90%) × 50% • 단독주택 : <u>통합평가액</u> × 50% ('05 상반기중 고시)
○ 토지 : 공시지가 × <u>지자체적용률</u> (평균 39.2%)	○ 토지 : 공시지가 × 50%

□ **【종합부동산세】**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여부 판정

- 주택 :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나대지 :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 6억원 초과
- 사업용토지 :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 ※ 인별합산 : 부부가 각각 주택소유시 9억 초과 여부는 각각 계산(부부별산제)

- ※ 사업용 토지: 사무실, 빌딩, 상가 등의 부속토지
- ※ 사업용 건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 ※ 농지, 임야(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 개편후 시행 첫해인 2005년의 전체적인 보유세액 증가규모는 금년(3.2조원)의 10%수준으로 함

□ **【개별 세부담 상한선】**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개별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제도화함

- 2005년의 세부담액은 금년보다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2006년 이후에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세율체계】** 현행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될 수 있는 한 세율단계를 단순하게 하고 완만하게 하며 전반적으로 인하함

- ※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이와 같은 요건에 맞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11월 10일경)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임
- ※ 개별적인 세부담 변동내역은 세율확정 후 사례별로 예시

□ **【시행시기】** 11월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 2005년도 과세분(2005년 하반기 최초 부과)부터 적용함

5. 부과·징수 등

□ **종합부동산세(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필요시 시·군·구에 위탁)

□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다음 순서로 배분)

- ① '04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
- ②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예: 자립도 30% 이하)
- ③ 거래세 완화 재원으로 활용 등

□ **제·개정 대상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안 제정] 재경부(4개)
- 국세기본법 등 3개 세법]
- 지방세법] 행자부(2개)
- 지방교부세법]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 이 자료는 2004년 11월 4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재정경제부는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를 작성하여 11월 4일(목)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을 의미

○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국세의 220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2003년 실적 및 2004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작성

※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6번째로 작성되는 것임

□ 2004년도 조세지출 전망액은 18조 6,270억원으로서 GDP 전망액(779조원) 대비 2.39%이고 조세지출비율은 14.1%

* 조세지출비율(14.1%)

= 18조 6,270억원/(관련국세 전망액 113조 705억원 + 18조 6,270억원)

○ 2004년도 조세지출액은 조세지출 항목 수의 감소('03년 254개 → '04년 220개)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근로자 관련 감면액의 증가로

○ 2003년도 조세지출 실적 17조 5,080억원(조세지출비율 14.0%)보다 1조 1,190억원 늘어날 전망
(주요 증가내역)

- 임시투자세액공제 : +5,300억원
- 근로소득특별공제(보험료) : +3,100억원
(교육비) : +1,500억원
-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손금산입 : +2,300억원

1.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00 실적	2001 실적	2002 실적	2003 실적(C)	2004전망(D)	전년대비 증감률(D/C)
○ 조세지출(A)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6,270	6.4
• 직접세	95,147	97,183	101,676	123,311	135,842	10.2
• 간접세	36,293	39,025	44,323	50,558	49,294	△2.5
• 관 세	1,384	1,090	1,262	1,211	1,134	△6.4
○ 관련국세(B)	832,214	886,020	964,086	1,075,599	1,130,705	5.1
○ 조세지출비율*	13.8%	13.4%	13.3%	14.0%	14.1%	+0.1%p

* 조세지출비율 = A/(A+B) = 조세지출액 / (조세지출액 + 관련국세)

2. 2004년도 조세지출증가 주요내역

(단위 : 억원)

	2002 실적	2003 실적	2004전망
• 조세지출(A)	147,261	175,080	186,270
• 관련국세(B)	964,086	1,075,599	1,130,705
• 조세지출비율 = A/(A+B)	13.3%	14.0%	14.1%
	+ 27,819	+ 11,190	

※ 주요증가항목

- 임시투자세액공제(+6,491)
- R&D 세액공제(+4,730)
- 근로자 신용카드·경로 우대자 소득공제(+3,90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860)

- 임시투자세액공제(+5,261)
- 보험료·교육비 근로소득 특별공제(+4,587)
- 사용자부담 근로자 건강보험료 손금산입(+2,332)

3. 2004년도 조세지출전망액 (기능별·제목별·감면방법별)

(1) 기능별 조세지출 전망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총 8조 792억원 (43.4%)

* () 내는 전체 조세지출 전망액 중 비중

- 근로자 지원 : 4조 1,148억원(22.1%)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 농어민 지원 : 2조 6,669억원(14.3%)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

- 저축지원: 1조 2,975억원(7.0%)
 -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등

② 중소기업·투자·R&D 등 지원 : 총 6조 9,397억원(37.2%)

- 설비투자 및 R&D 지원 : 3조 6,343억원(19.5%)
 -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 2조 1,345억원(11.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 SOC·구조조정·지역균형발전 지원 : 1조 1,709억원(6.3%)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등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 2조 8,280억원(15.2%)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 2조 551억원(11.0%)
-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교육·문화 지원 : 3,448억원(1.9%)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환경보호 지원 : 3,499억원(1.9%)

④ 국방부문 지원 : 6,119억원(3.3%)

- 군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산업 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등

(2) 세목별 조세지출 전망

- 소득세 67,187억원(36.1%), 법인세 68,088억원(36.5%), 부가가치세 33,253억원(17.9%)으로
-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90.5%를 차지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전망

- 직접세 부문 중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한 직접감면이 13조 1,270억원(70.4%)
- 직접세 부문 중 준비금, 과세이연 등을 통한 간접감면은 4,572억원(3.0%)
-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4조 9,294억원(28.9%)임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간 연장

※ 이 자료는 2004년 10월 21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간 연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 내용

- 정부는 유가안정대책(Contingency Plan)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를
 - ※ 관세율 인하 조치 내용('04. 4. 30)
 - 원유(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것) : 3% → 1%
 - 석유제품(휘발유·등유·경유·중유) : 7% → 5%
 -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 '04. 10. 30부터 6개월 연장하여 '05. 4. 30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음
- 향후 추진일정
 - 10. 25(월) : 차관회의
 - 10. 26(화) : 국무회의 심의·의결
 - 10. 30(토) : 시행 예정(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공포일)

1. 배경

- '04. 4. 30 유가안정대책(Contingency Plan)에 따라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하여 6월('04. 4. 30~10. 29)간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 적용 중
 - 관세 인하(4.30) : 원유(3% → 1%), 석유제품(7% → 5%)
-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안정,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석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

2. 연장 내용

-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하된 관세율(할당관세)을 6개월간 연장 적용

[적용품목과 관세율]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관 세 율
2709	원유(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것)	1%
2710	휘발유 및 그 조제품	5
2710	등유 및 그 조제품	5
2710	경 유	5
2710	중 유	5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할당 0%(’03. 7. 1 이후)

- 적용시기 : ’04. 10. 30부터 ’05. 4. 30까지 수입신고분

〈참고〉 할당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3. 경제적 효과

- 석유제품 가격인하(이론상) : △5원/ℓ
- 물가(소매물가 기준) : △0.025%P 인하
- 예상 지원규모 : 약 1,400억원/6월

-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2004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 원유 등 100개 품목 운용중

〈연도별 할당관세 품목 현황〉

(단위: 개)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시정	계
기초원자재	농축산업	중소기업	첨단산업			
18	19	12	15	18	18	100

금년도 종합토지세 2조 1,168억원 부과

※ 이 자료는 2004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에서 발표한 「금년도 종합토지세 2조 1,168억원 부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시도별 부과 현황

- 세수 증가액 : 4,669억원, 전년 대비 28.3% ↑
 - '03년, 1조 6,499억원 ⇒ '04년, 2조 1,168억원(4,669억원 ↑)
 - 과세표준액 : '03년, 382조원 ⇒ '04년, 469조원(87조원 ↑)
-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정책 및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24.9%)의 경우 증가율이 39.5%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인천지역도 택지개발 등으로 지가가 급등(경기 17.2%, 인천 12.4%)하여 증가율이 각각 32.6%, 28.7%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음
- 강원도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균 4.8% 상승하였으나,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평균 4.1% 인상하여 증가율이 24.6%(100억원)로 나타나고 있음
-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약 11~20% 정도 세액이 증가하였음

□ 시군별 현황

-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등의 세액 인상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음

- 양천구 51.8%, 송파구 50.2%, 서초구 49.4%, 강남구 47.2%
- 대규모 택지 개발, 공장 유치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수도권 일부 시군의 경우 올해 적용비율을 4% 이상 인상하여 전년보다 인상률이 증가
 - 파주시 48.2%, 안산시 47.4%, 하남시 45.3%
 - ※ 적용비율 4% 이상 인상 : 하남시, 오산시, 광주시, 파주시 (5%)

□ 납세자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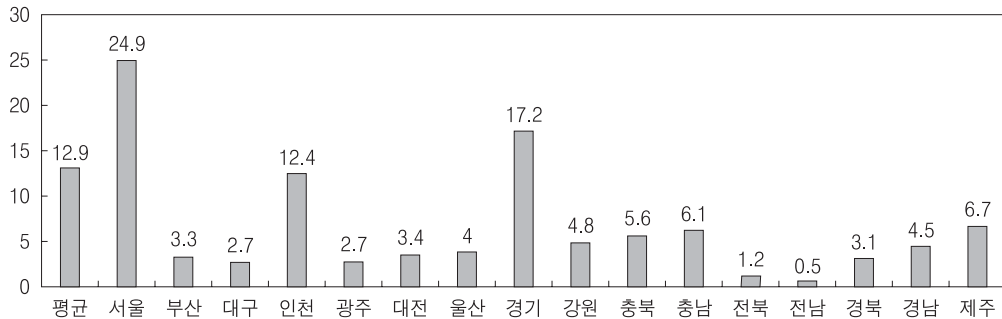
- 전체 납세인원 1,636만명 중 개인은 96.2%인 1,574만명이며 법인을 비롯한 단체가 3.8%인 62만명임
- 전체 세액 2조 1,168억원 중 개인납세자는 54.3%인 1조 1,508억원, 법인을 포함한 단체는 45.7%인 9,660억원임
- 1백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전체의 1.1%인 17만명으로 작년보다 4만명 증가하였고, 전체 세액의 61.7%인 1조 3,075억원을 부담
- 1인당 부담액은 12만 9천원으로 작년 대비 2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납세자의 88%인 1,440만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납세자임

□ 인상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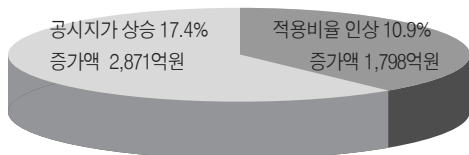
○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03년 개별공시지가가 전

국 평균 12.9%('02년 3.4%) 상승 및 과표 적용비율 전
국평균 3.1%p 인상

〈'03년 시도별 공시지가 인상률〉



○ 증가비중은 지가상승분이 2,871억원, 적용비율 인상분이 1,798억원으로 6 : 4이며 지가상승분의 영향이 보다 큼



○ 금년 재산세의 경우 불형평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서울-지방간, 강남-강북간 시가반영을 포함 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가반영으로 인해 세액은 급격히 증가된 반면, 소기의 불형평 해소는 미흡하여 조세 불만이 야기되었음

○ 그러나 이번 종합토지세는 불형평 해소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지가(시가) 인상에 따른 자연적인 세액 인상이 증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같은 불형평 해소에 따른 세액의 급격한 인상과 불합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납기 경과시 불이익 부여 제도

○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금년도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임

※ 법정납기는 10월31일이나 일요일이므로 11월1일이 실제납기일임

○ 납부기한인 11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최고 5년간 77%까지 부과)

□ 징수유예 및 분납제도 안내

○ i) 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ii)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iii)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납이나 물납이

가능하며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10. 16~11. 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10. 22)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이익이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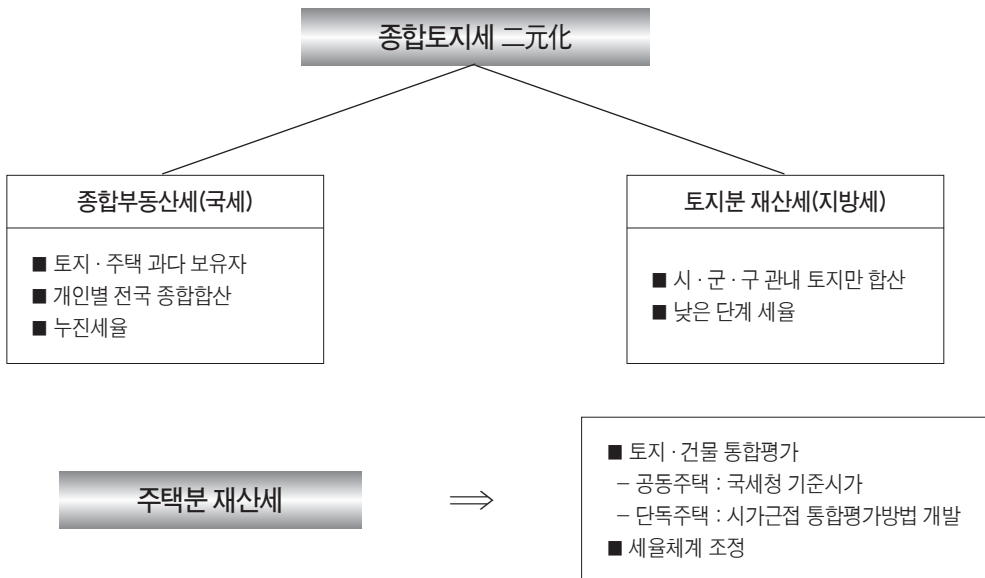
- 문의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명백하게 잘못 부과된 사실이 밝혀지면 시·군·구에서 직권

취소 조치를 함

□ **향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 종합부동산세제, 주택세 도입, 거래세 동시 완화
- 내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전국적으로 인별 합산 누진과세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고, 지방세는 시·군·구의 관내 토지만 합산 과세하는 방향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평가방법과 세율이 달라 나타나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건물을 합쳐서 통합 과세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재조정함
- 한편 부동산 과표 현실화,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세부담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낮추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나갈



〈첨 부〉

□ 2004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구 분	2004	2003	증 감
부과총액	2조1,168억원	1조6,499억원	28.3%(증4,669억원)
납세인원	1,636만명	1,581만명	3.4%(증 55만명)
1인당 세부담액	129천원	104천원	23.9%(증 2.5천원)

□ 2004 세액단계별 현황

구 분		계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5만원 미만	5만원 초과 10만원 미만	1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초과
'04년	인원	1,636만명 (100%)	543 (33.2)	736 (45)	161 (9.8)	179 (10.9)	17 (1.1)
	세액	21,168억원 (100%)	285 (1.3)	1,835 (8.7)	1,178 (5.6)	4,795 (22.7)	13,075 (61.7)
'03년	인원	1,581만명 (100%)	590 (37.3)	700 (44.3)	138 (8.7)	140 (8.9)	13 (0.8)
	세액	16,499억원 (100%)	263 (1.6)	1,572 (9.5)	976 (5.9)	3,537 (21.5)	10,151 (61.5)

□ 개인·법인 과세 현황

구 분	건수 (천건)	세액 (백만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0.1%	분리 0.3%	분리 5%
계	35,660	2,116,841	982,836	767,627	73,524	146,138	146,716
개인 (%)	33,561 (94.1)	1,150,762 (54.3)	679,974 (69.2)	318,053 (41.4)	67,115 (91.3)	33,369 (22.8)	52,251 (35.6)
법인 (%)	2,099 (5.9)	966,079 (45.7)	302,862 (30.8)	449,574 (58.8)	6,409 (8.7)	112,769 (78.5)	94,465 (63.5)

□ 연도별 과표 적용비율 및 부과세액 현황

연도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적용비율 (%)	15.0	31.1	30.5	29.2	29.3	32.3	32.4	33.3	36.1	39.2
증감률 (%p)	-	△0.4	△0.6	△1.3	0.1	2.9	0.1	0.9	2.8	3.1
부과세액	4,155 (-)	13,026 (△1.2)	13,464 (3.3)	12,924 (△0.4)	13,303 (2.9)	13649 (2.6)	14,223 (4.2)	14,512 (2.0)	16,499 (13.7)	21,168 (28.3)

□ '04 시·도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2004 세액	2003 세액	증가율 (증가액)
계	2,116,841	1,649,884	28.3% (466,957)
서울	759,927	544,737	39.5% (215,190)
부산	147,697	130,488	13.1% (17,209)
대구	79,515	71,069	11.8% (8,446)
인천	103,267	80,233	28.7% (23,034)
광주	43,202	37,728	14.5% (5,474)
대전	42,449	36,125	17.5% (6,324)
울산	39,241	32,549	20.5% (6,692)
경기	478,802	360,891	32.6% (117,911)
강원	50,577	40,574	24.6% (10,003)
충북	39,854	33,237	19.9% (6,617)
충남	54,436	45,094	20.7% (9,342)
전북	42,643	37,695	13.1% (4,948)
전남	43,992	38,009	15.7% (5,983)
경북	73,889	62,864	17.5% (11,025)
경남	85,167	72,650	17.2% (12,517)
제주	32,183	25,941	24.0% (6,242)

□ 자치단체별 인상수준

구 분	단체	단 체 명
계	234	신설된 경제자유지역 제외(인천 중구·연수·서구, 부산 강서, 경남 진해)
50% 이상	6	시흥시, 고창군, 통영시, 응진군, 양천구, 송파구
30~50% 미만	43	서초구, 파주시, 안산시, 강남구, 하남시,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오산시, 경주시, 은평구, 종로구, 강동구, 당진군, 광진구, 부천시, 북제주군, 정선군, 동작구, 광주시, 용산구, 인천 남동구, 음성군, 구로구, 강서구, 원주시, 강화군, 화성시,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고양시, 노원구, 가평군, 남제주군, 청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안양시, 평창군, 평택시, 양평군, 수원시
20~30% 미만	57	무주군, 대전 동구, 의왕시, 과천시, 거제시, 부안군, 울산 중구, 충주시, 광명시, 중랑구, 계양구, 강북구, 의정부시, 서울 중구, 포천시, 영암군, 칠곡군, 부평구, 김포시, 강릉시, 영월군, 구리시, 천안시, 인천 남구, 남양주시, 이천시, 대전 서구, 태백시, 부산 남구, 철원군, 영등포구, 울주군, 의령군, 강원 고성군, 용인시, 광산구, 목포시, 안성시, 산청군, 공주시, 인천 동구, 화순군, 인천 서구, 여주군, 삼척시, 계룡시, 연천군, 동대문구, 청도군, 유성구, 아산시, 춘천시, 홍천군, 보령시, 울산 남구, 구미시, 함안군
10~20% 미만	88	황성군, 인천 연수구, 합천군, 달성군, 서귀포시, 광주 북구, 동해시, 함양군, 사하구, 영광군, 태안군, 화천군, 군포시, 순천시, 성남시, 양구군, 울진군, 울산 북구, 증평군, 신안군, 기장군, 장수군, 금천구, 곡성군, 안동시, 제주시, 담양군, 밀양시, 완도군, 김해시, 장흥군, 양산시, 상주시, 성주군, 예산군, 순창군, 영주시, 연기군, 대구 중구, 진천군, 옥천군, 군위군, 부산 연제구, 단양군, 부산 북구, 수성구, 함평군, 금산군, 영천시, 부산 동구, 익산시, 하동군, 부산 서구, 영동군, 수영구, 금정구, 임실군, 장성군, 논산시, 경남 고성군, 의성군, 청주시, 강진군, 광주 서구, 완주군, 고령군, 사천시, 부산 진구, 거창군, 부여군, 부안군, 사상구, 마산시, 진주시, 진안군, 영덕군, 정읍시, 부산 중구, 고흥군, 전주시, 울산 동구, 청송군, 구례군, 여주시, 달서구, 남원시, 괴산군
10% 미만	35	보은군, 문경시, 대구 동구, 속초시, 군산시, 창령군, 해남군, 서천군, 대구 서구, 서산시, 봉화군, 김천시, 포항시, 대구 북구, 대덕구, 대구 남구, 울릉군, 나주시, 제천시 예천군, 남해군, 영도구, 광주 남구, 김제시, 보성군, 경산시, 진도군, 광양시, 해운대구, 청양군, 광주 동구, 영양군, 동래구, 인제군, 양양군
0~-5%	2	대전 중구, 홍성군
-29~-69%	3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진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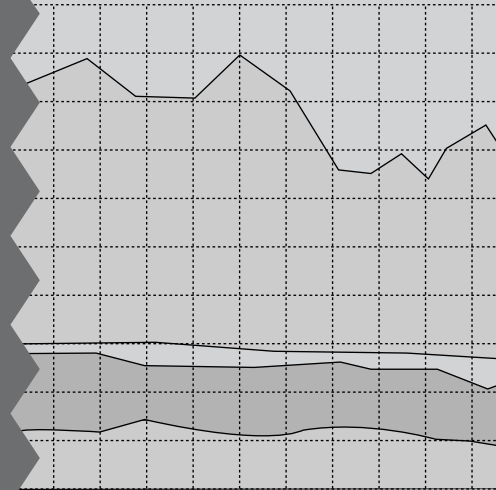
재정통계

• 법인세 Ⅲ편

• 자산재평가세 편

1.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2. 자산재평가세 부과
3. 자산재평가 산출내역
4. 자산별 재평가 상황

• 부가가치세 Ⅰ편



1.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부과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63	170	86	86	-	0	136.0	135.8
1966	274	363	335	334	-	2	122.3	121.7
1967	528	816	726	724	-	2	137.4	137.1
1968	856	817	822	800	-	23	96.1	93.4
1969	1,007	900	871	870	-	1	86.5	86.4
1970	1,178	783	717	716	-	-	60.8	60.8
1971	1,248	1,284	1,317	1,315	-	2	105.5	105.3
1972	1,074	1,513	1,431	1,429	-	2	133.3	133.1
1973	1,180	1,653	1,041	1,041	-	-	88.2	88.2
1974	2,090	2,456	2,421	2,421	-	-	115.8	115.8
1975	5,527	5,150	5,077	5,077	-	-	91.9	91.9
1976	8,767	8,360	7,881	7,881	-	-	89.9	89.9
1977	5,479	7,991	7,764	7,746	-	18	141.7	141.4
1978	6,915	6,759	6,763	6,763	-	-	97.8	97.8
1979	9,804	11,477	11,159	10,389	-	769	113.8	106.0
1980	23,190	17,231	22,535	22,418	-	117	97.2	96.7
1981	28,129	40,800	40,178	40,178	-	-	142.8	142.8
1982	55,767	57,344	57,632	57,629	-	3	103.3	103.3
1983	64,467	50,288	50,293	50,293	-	-	78.0	78.0
1984	55,633	35,052	35,060	35,032	-	29	63.0	63.0
1985	36,315	16,686	16,686	16,686	-	0	45.9	45.9
1986	28,066	6,049	6,049	6,049	-	-	21.6	21.6
1987	6,129	13,445	13,464	13,452	-	12	219.7	219.5
1988	9,045	34,689	32,791	32,723	-	68	362.5	361.8
1989	45,885	89,707	93,635	89,671	-	3,964	204.1	195.4
1990	49,685	95,231	95,282	95,282	-	-	191.8	191.8
1991	32,768	65,905	66,165	65,899	-	266	201.9	201.1
1992	40,935	68,911	68,877	68,876	-	1	168.3	168.3
1993	115,557	99,578	98,525	98,505	-	20	85.3	85.2
1994	129,700	86,306	86,406	86,406	-	-	66.6	66.6
1995	80,300	93,388	93,087	89,105	-	3,982	115.9	111.0
1996	90,200	217,342	216,721	216,674	-	47	240.3	240.2
1997	229,200	168,597	168,614	167,214	-	1,400	73.6	73.0
1998	328,500	483,747	457,414	457,208	1	205	139.2	139.2
1999	818,012	1,025,763	1,018,662	1,017,263	-	1,399	124.5	124.4
2000	508,000	541,371	538,185	537,219	58	908	105.9	105.8
2001	114,000	151,009	175,192	173,462	256	1,474	153.7	152.2
2002	-	-	2,006	1,885	100	21	-	-

주: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자산재평가세 부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 또는 환부	당기 납부한 연부연납세액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1981	계	40,800	24,404	1,155	15,241	20,095
	영리법인	40,730	24,363	1,155	15,212	20,062
	외국법인	41	16	-	25	16
	비영리법인	6	6	-	-	6
	개인	22	19	0	4	11
1982	계	57,343	33,988	467	22,888	31,756
	영리법인	57,285	33,949	466	22,870	31,727
	외국법인	16	-	-	16	-
	비영리법인	15	15	-	-	13
	개인	27	24	1	2	15
1983	계	50,288	17,008	520	32,760	19,127
	영리법인	50,089	16,810	538	32,741	18,935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22	9	-	13	8
	개인	177	190	△18	6	184
1984	계	35,052	17,117	237	17,698	13,004
	영리법인	34,799	17,055	230	17,515	12,986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14	-	8	6	-
	개인	239	62	△1	178	18
1985	계	16,686	3,876	110	12,700	2,825
	영리법인	16,650	3,853	115	12,682	2,820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0	0	-	-	-
	개인	36	23	△5	18	5
1986	계	6,049	2,645	83	3,321	2,019
	영리법인	6,025	2,618	85	3,321	2,001
	외국법인	18	18	-	-	18
	비영리법인	-	-	-	-	-
	개인	6	8	△2	-	-
1987	계	13,445	11,047	167	2,231	9,925
	영리법인	13,382	11,009	160	2,213	9,925
	외국법인	18	-	-	18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45	38	7	-	-
1988	계	34,689	22,678	1,802	10,209	20,283
	영리법인	34,567	22,587	1,802	10,178	20,199
	외국법인	6	6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116	85	-	31	84

2. 자산재평가세 부과(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 또는 환부	당기 납부한 연부연납세액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1989	계	89,707	67,746	△619	22,580	65,780
	영리법인	89,639	67,746	△619	22,512	65,780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68	- -	- -	- 68	- -
1990	계	95,231	25,756	△281	69,756	21,713
	영리법인	95,231	25,756	△281	69,756	21,713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 -
1991	계	65,905	39,175	4,300	22,430	43,726
	영리법인	65,868	39,138	4,300	22,430	43,689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37 -	37 -	- -	- -	37 -
1992	계	68,911	24,088	1,253	43,570	20,882
	영리법인	68,911	24,082	1,259	43,570	20,882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6	- △6	- -	- -
1993	계	99,578	78,806	△221	20,993	78,924
	영리법인	99,578	78,806	△221	20,993	78,924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 -
1994	계	86,306	15,509	△721	71,518	13,660
	영리법인	86,289	15,492	△721	71,518	13,657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7 -	17 -	- -	- -	3 -
1995	계	93,388	76,092	3,552	13,744	73,578
	영리법인	93,371	76,078	3,552	13,741	73,578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7 -	14 -	- -	3 -	- -
1996	계	217,342	142,203	△293	75,432	76,168
	영리법인	217,141	141,796	△87	75,432	75,949
	외국법인	13	13	-	-	12
	비영리법인 개인	188 -	394 -	△206 -	- -	207 -

2. 자산재평가세 부과(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 또는 환부	당기 납부한 연부연납세액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1997	계	168,597	36,427	2,126	130,044	43,556
	영리법인	168,579	36,396	2,139	130,044	43,542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8 -	31 -	△13 -	- -	14 -
1998	계	483,747	427,095	1,108	55,544	396,844
	영리법인	480,722	424,124	1,085	55,513	395,966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3,010 15	2,956 15	23 -	31 -	878 -
1999	계	1,025,763	464,323	18,451	542,989	422,485
	영리법인	1,015,448	457,615	18,364	539,469	416,703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0,311 4	6,704 4	87 -	3,520 -	5,782 -
2000	계	541,371	186,570	24,666	330,135	98,815
	영리법인	523,244	170,769	24,187	328,288	93,617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7,911 216	15,615 186	479 -	1,817 30	5,168 30
2001	계	151,009	7,412	4,090	139,507	9,104
	영리법인	144,364	7,266	3,893	133,205	8,522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6,562 83	146 -	205 △8	6,211 91	582 -
2002	계	-	-	-	-	-
	영리법인	-	-	-	-	-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	- -

주: 1. △는 환부세액을 표시함.

2. 차년도연부연납세액은 당해연도에 신고한 자산재평가세 중 다음해에 납부할 세액 상당분임.

3. 세액합계 = 자진납부 + 추징 또는 환부 + 당기에 납부한 연부연납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자산재평가 산출내역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1981	계	561	5,319,661	3,167,184	2,152,478	450,339	1,702,139	51,076
	영리법인	555	5,311,725	3,161,860	2,149,865	450,339	1,699,526	50,997
	외국법인	1	3,592	2,530	1,062	-	1,062	32
	비영리법인	1	2,001	1,591	409	-	409	12
	개인	4	2,343	1,202	1,141	-	1,141	34
1982	계	479	9,096,697	4,964,683	4,132,015	341,060	3,790,955	66,861
	영리법인	471	6,001,875	3,434,458	2,567,417	341,060	2,226,356	66,793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4	3,092,420	1,529,153	1,563,267	-	1,563,267	29
	개인	4	2,403	1,071	1,331	-	1,331	40
1983	계	302	3,488,696	1,862,631	1,626,065	227,337	1,398,728	36,020
	영리법인	290	3,080,097	1,666,626	1,413,471	227,315	1,186,156	35,59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5	383,314	184,214	199,100	22	199,078	17
	개인	7	25,285	11,790	13,494	-	13,494	405
1984	계	430	2,432,008	1,209,295	1,222,713	129,396	1,093,317	32,799
	영리법인	425	2,429,242	1,208,567	1,220,675	129,396	1,091,279	32,73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5	2,766	727	2,038	-	2,038	61
1985	계	176	377,513	136,356	241,157	20,480	220,676	6,620
	영리법인	169	375,426	135,360	240,065	20,480	219,585	6,58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7	2,087	996	1,091	-	1,091	33
1986	계	125	389,755	165,466	224,289	42,693	181,596	5,448
	영리법인	122	388,050	165,167	222,883	42,693	180,190	5,406
	외국법인	1	1,382	170	1,212	-	1,212	36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2	322	129	193	-	193	6
1987	계	127	1,244,996	494,516	750,480	32,862	717,618	21,528
	영리법인	122	1,240,738	493,295	747,443	32,862	714,581	21,43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5	4,258	1,221	3,037	-	3,037	90
1988	계	187	2,713,120	1,327,347	1,385,773	46,105	1,339,668	40,190
	영리법인	183	2,704,526	1,324,685	1,379,841	46,105	1,333,736	40,012
	외국법인	1	427	219	208	-	208	6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3	8,167	2,443	5,724	-	5,724	172

3. 자산재평가 산출내역(계속)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1989	계	204	10,512,647	5,545,292	4,967,355	193,035	4,774,320	143,230
	영리법인	204	10,512,647	5,545,292	4,967,355	193,035	4,774,320	143,230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1990	계	150	1,884,225	718,582	1,165,643	34,473	1,131,170	33,935
	영리법인	150	1,884,225	718,582	1,165,643	34,473	1,131,170	33,935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1991	계	130	5,446,630	1,350,572	4,096,058	658,334	3,437,724	103,131
	영리법인	129	5,443,689	1,350,117	4,093,572	658,334	3,435,238	103,057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	2,941	455	2,486	-	2,486	74
1992	계	94	3,058,887	389,599	2,669,288	142,557	2,526,731	45,621
	영리법인	78	1,929,357	270,802	1,658,555	137,848	1,520,707	45,621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6	1,129,530	118,797	1,010,733	4,709	1,006,024	-
1993	계	144	8,186,361	2,103,895	6,082,466	1,011,912	5,070,554	152,017
	영리법인	143	8,182,901	2,103,752	6,079,149	1,011,912	5,067,237	152,017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	3,460	143	3,317	-	3,317	-
1994	계	88	1,266,340	136,205	1,130,135	83,496	1,046,639	31,398
	영리법인	86	1,264,864	136,135	1,128,729	82,740	1,045,989	31,37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2	1,476	70	1,406	756	650	20
1995	계	152	6,633,571	1,034,187	5,599,384	561,602	5,037,782	151,133
	영리법인	151	6,633,070	1,034,137	5,598,933	561,602	5,037,331	151,119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	501	50	451	-	451	14
1996	계	200	7,737,386	1,448,465	6,288,921	817,939	5,470,982	164,129
	영리법인	197	7,717,109	1,444,285	6,272,824	815,880	5,456,944	163,707
	외국법인	1	1,130	269	861	-	861	26
	비영리법인 개인	2	19,147	3,911	15,236	2,059	13,177	396

3. 자산재평가 산출내역(계속)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1997	계	150	11,551,972	4,293,936	7,258,036	431,150	6,826,886	204,806
	영리법인	148	11,525,175	4,283,782	7,241,393	415,607	6,825,786	204,774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2 -	26,797 -	10,154 -	16,643 -	15,543 -	1,100 -	32 -
1998	계	1,256	114,216,159	70,589,249	43,626,910	9,768,096	36,858,814	822,363
	영리법인	1,201	113,539,992	70,147,068	43,392,924	6,714,753	36,678,171	819,220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55 -	676,167 -	442,181 -	233,986 -	53,343 -	180,643 -	3,143 -
1999	계	1,031	140,714,769	101,182,677	39,532,092	3,595,470	35,936,622	897,609
	영리법인	726	136,813,231	98,452,204	38,361,027	3,581,954	34,779,073	881,649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301 4	3,901,130 408	2,730,201 272	1,170,929 136	13,516 -	1,157,413 136	15,956 4
2000	계	1,630	41,787,774	23,530,447	18,257,327	1,458,757	16,798,570	396,541
	영리법인	693	37,013,703	20,208,459	16,805,244	1,363,218	15,442,026	377,111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933 4	4,763,387 10,684	3,319,526 2,462	1,443,861 8,222	94,800 739	1,349,061 7,483	19,351 79
2001	계	628	14,484,301	8,942,405	5,541,896	841,055	4,700,841	104,824
	영리법인	498	13,537,430	8,278,794	5,258,636	838,579	4,420,057	99,029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122 8	907,307 39,564	634,691 28,920	272,616 10,644	2,476 -	270,140 10,644	5,517 278
2002	계	-	-	-	-	-	-	-
	영리법인	-	-	-	-	-	-	-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개인	-	-	-	-	-	-	-

주: 1.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장부가액

2. 차감과세표준액 = 재평가차액 - 이월결손금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자산별 재평가 상황

(단위: 백만원)

연도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1981	계	5,319,661	3,167,184	2,152,478	3,736,275
	감가상각자산	4,008,861	2,559,844	1,449,016	3,160,264
	유형감가상각자산	4,003,452	2,556,174	1,447,278	3,156,337
	무형감가상각자산	5,408	3,671	1,738	3,927
	토 지	1,114,245	466,176	648,069	464,775
	주 식	194,458	140,244	54,214	110,323
	입 목	2,098	919	1,179	913
1982	계	9,096,697	4,964,683	4,132,015	5,961,097
	감가상각자산	7,794,293	4,381,809	3,412,484	5,379,274
	유형감가상각자산	7,789,733	4,378,438	3,411,296	5,375,873
	무형감가상각자산	4,559	3,371	1,188	3,401
	토 지	1,196,105	507,358	688,747	504,858
	주 식	101,911	73,208	28,703	74,660
	입 목	4,388	2,307	2,081	2,305
1983	계	3,488,696	1,862,630	1,626,065	2,314,225
	감가상각자산	2,315,193	1,455,698	859,495	2,056,491
	유형감가상각자산	2,105,398	1,337,355	768,044	1,938,331
	무형감가상각자산	209,794	118,343	91,451	118,160
	토 지	1,048,130	348,183	699,947	214,771
	주 식	124,631	58,493	66,139	42,709
	입 목	742	257	484	254
1984	계	2,432,008	1,209,295	1,222,713	1,737,586
	감가상각자산	1,552,292	983,030	569,262	1,517,758
	유형감가상각자산	1,551,569	982,477	569,091	1,517,208
	무형감가상각자산	723	552	171	549
	토 지	849,573	205,755	643,818	199,092
	주 식	27,713	19,804	7,909	20,018
	입 목	2,431	706	1,724	719
1985	계	377,513	136,356	241,157	210,438
	감가상각자산	153,120	94,483	58,638	169,628
	유형감가상각자산	153,102	94,465	58,637	169,610
	무형감가상각자산	18	18	0	18
	토 지	189,833	34,191	155,641	33,127
	주 식	34,244	7,373	26,871	7,373
	입 목	316	310	7	310
1986	계	389,755	165,466	224,289	222,561
	감가상각자산	215,848	141,617	74,231	198,713
	유형감가상각자산	215,826	141,596	74,230	198,691
	무형감가상각자산	22	21	1	22
	토 지	172,387	22,503	149,884	22,608
	주 식	1,393	1,297	96	1,191
	입 목	126	49	78	49

4. 자산별 재평가 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1987	계	1,244,996	494,516	750,480	854,449
	감가상각자산	789,507	397,743	391,764	758,853
	유형감가상각자산	789,504	397,741	391,763	758,851
	무형감가상각자산	3	2	1	2
	토 지	401,554	80,155	321,399	78,979
	주 식	36,292	15,910	20,382	15,910
	입 목	17,643	708	16,935	707
1988	계	2,713,120	1,327,347	1,385,773	2,085,557
	감가상각자산	1,689,927	1,074,789	615,138	1,831,125
	유형감가상각자산	1,689,927	1,074,789	615,138	1,831,125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932,009	230,425	701,584	231,921
	주 식	89,957	21,652	68,305	21,983
	입 목	1,227	481	746	528
1989	계	10,512,647	5,545,292	4,967,355	10,377,885
	감가상각자산	8,852,066	5,293,711	3,558,355	10,125,827
	유형감가상각자산	8,852,037	5,293,682	3,558,355	10,125,798
	무형감가상각자산	29	29	-	29
	토 지	1,424,061	200,061	1,224,000	200,556
	주 식	230,872	48,142	182,730	48,142
	입 목	5,648	3,377	2,271	3,360
1990	계	1,884,225	718,582	1,165,643	1,005,025
	감가상각자산	929,197	612,034	317,163	898,796
	유형감가상각자산	929,193	612,030	317,163	898,792
	무형감가상각자산	4	4	-	4
	토 지	951,550	104,563	846,987	104,244
	주 식	3,283	1,895	1,388	1,895
	입 목	195	90	105	90
1991	계	5,446,630	1,350,572	4,096,058	2,111,207
	감가상각자산	1,813,035	1,063,109	749,926	1,819,618
	유형감가상각자산	1,813,035	1,063,109	749,926	1,819,618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3,559,148	260,197	3,298,951	266,008
	주 식	69,896	26,861	43,035	25,176
	입 목	4,551	405	4,146	405
1992	계	3,058,887	389,599	2,669,288	729,181
	감가상각자산	438,035	201,628	236,407	542,371
	유형감가상각자산	438,035	201,628	236,407	542,371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2,552,672	171,410	2,381,262	170,166
	주 식	66,094	16,315	49,779	16,395
	입 목	2,086	246	1,840	249

4. 자산별 재평가 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1993	계	8,186,361	2,103,895	6,082,466	3,064,726
	감가상각자산	2,715,132	1,619,018	1,096,114	2,581,816
	유형감가상각자산	2,715,132	1,619,018	1,096,114	2,581,81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5,204,869	312,398	4,892,471	310,424
	주 식 입 목	260,121 6,239	171,504 975	88,617 5,264	171,504 982
1994	계	1,266,340	136,205	1,130,135	425,406
	감가상각자산	248,438	80,270	168,168	364,076
	유형감가상각자산	248,438	80,270	168,168	364,07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1,017,212	55,609	961,603	61,004
	주 식 입 목	- 690	- 326	- 364	- 326
1995	계	6,633,571	1,034,187	5,599,384	2,346,787
	감가상각자산	1,522,232	640,597	881,635	1,961,124
	유형감가상각자산	1,519,552	639,517	880,035	1,958,826
	무형감가상각자산	2,680	1,080	1,600	2,298
	토 지	4,814,109	296,634	4,517,475	288,899
	주 식 입 목	262,991 34,239	91,469 5,487	171,522 28,752	91,268 5,496
1996	계	7,737,386	1,448,465	6,288,921	3,457,036
	감가상각자산	2,529,122	974,825	1,554,297	2,988,276
	유형감가상각자산	2,529,122	974,825	1,554,297	2,988,27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5,001,144	398,477	4,602,667	393,169
	주 식 입 목	204,961 2,159	74,592 571	130,369 1,588	75,020 571
1997	계	11,551,972	4,293,936	7,258,036	4,622,576
	감가상각자산	8,475,427	4,009,819	4,465,608	4,339,046
	유형감가상각자산	8,475,416	4,009,808	4,465,608	4,339,035
	무형감가상각자산	11	11	-	11
	토 지	2,993,745	252,401	2,741,344	251,814
	주 식 입 목	70,982 11,818	31,214 502	39,768 11,316	31,214 502
1998	계	114,216,159	70,589,249	43,626,910	92,219,937
	감가상각자산	80,927,199	57,310,525	23,616,676	79,495,385
	유형감가상각자산	78,649,220	56,295,956	22,353,264	78,480,255
	무형감가상각자산	2,277,979	1,014,569	1,263,412	1,015,130
	토 지	33,179,464	13,247,437	19,932,027	12,693,295
	주 식 입 목	102,970 6,526	27,666 3,621	75,303 2,904	27,666 3,591

4. 자산별 재평가 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연도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1999	계	140,714,769	101,182,677	39,532,092	127,056,278
	감가상각자산	111,981,632	87,829,392	24,152,240	113,760,410
	유형감가상각자산	111,944,692	87,800,364	24,144,328	113,731,008
	무형감가상각자산	36,940	29,028	7,912	29,402
	토지	28,722,168	13,345,432	15,376,736	13,288,061
	주식	512	512	-	512
	입목	10,457	7,341	3,116	7,295
2000	계	41,787,774	23,530,447	18,257,327	36,477,060
	감가상각자산	26,945,962	17,533,145	9,412,817	30,496,935
	유형자산	26,935,159	17,528,792	9,406,367	30,492,362
	무형자산	10,803	4,353	6,450	4,573
	토지	14,824,361	5,988,667	8,835,694	5,971,490
	주식	5,324	108	5,216	107
	입목	12,127	8,527	3,600	8,528
2001	계	14,484,301	8,942,405	5,541,896	13,171,710
	감가상각자산	7,969,904	5,933,290	2,036,614	10,299,115
	유형자산	7,969,887	5,933,276	2,036,611	10,299,092
	무형자산	17	14	3	23
	토지	6,501,329	2,998,491	3,502,838	2,861,991
	주식	1,191	270	921	248
	입목	11,877	10,354	1,523	10,356
2002	계	-	-	-	-
	감가상각자산	-	-	-	-
	유형자산	-	-	-	-
	무형자산	-	-	-	-
	토지	-	-	-	-
	주식	-	-	-	-
	입목	-	-	-	-

주: 재평가차액 = 재평가액 - 장부가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

유엔의 “국제조세기구” 창설 기도

최근 수년간 유엔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었다. 유엔은 대테러전쟁을 방해했다. 유엔의 예산은 낭비와 사기로 얼룩졌고 미국은 그 돈의 가장 큰 몫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반미 독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데, 그 독설의 상당 부분은 미국 원조를 받는 정부들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 프랑스와 브라질의 주도로 현재 유엔은 범세계적 세금을 징수하려고 한다. 최근의 유엔 정상회의에서 100개 이상 국가의 정치인들은 더 많은 외국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500억달러의 범세계적 세금징수계획을 지지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엔 관료들은 세계 납세자들의 돈을 사취하기 위한 다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아이디어는 금융거래세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융조직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사용할 때마다 유엔에 세금을 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될 것이다. 유엔은 또 에너지사용세를 공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ATM 카드를 사용한다면, 유엔에 두 번이나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만약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온라인으로 이 점을 항의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 유엔이 공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범세계적 세금이다.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화나는 일이다. 그러나 최악의 아이디어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하고 있는 국제조세기구(ITO)를 만들려는 계획이다. 이 새로운 슈퍼 관료기구는 범세계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포함해 막대한 권

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관료기구를 지지하는 유엔 보고서는 심지어 외국 정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일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반가운 뉴스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조세기구에 반대한다. 최근의 유엔 정상회의에서 앤 베네먼 미국 농무장관은 범세계적인 조세 징수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며 거부했다. 그리고 외국 원조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면서 “경제성장이 기아와 빈곤에 대한 장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범세계적 조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시라크 대통령은 유엔 정상회의에서 심지어 미국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는 “미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100개국이 지지하고, 아마도 150개국의 승인을 얻게 되어 새로운 정치상황을 형성하게 될 제안

에 반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위협과는 달리 유엔의 위협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엔은 이미 ‘조세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임시 전문가위원회’라고 알려진 미니 관료기구를 만들었다. 유엔이 ITO로 가는 중간 단계의 위원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 기구는 외국 정부들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탐색하는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낮은 세금 때문이다. 이 점은 미국이 ‘유해한 세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일부 외국 정부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고세율의 복지국가들은 저세율 국가들을 괴롭히기 위해 심지어 파리에 있는 또 하나의 좌파적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동원하고 있다. 범세계적인 세금 징수와 ITO는 일종의 정치적 석유 수출국기구(OPEC)라고 할 수 있는 세금 카르텔을 만들어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다.

2004년 10월 14일자 세계일보 해외논단
대니얼 J. 미첼/美 헤리티지재단 정치경제 연구원

‘보육지원 예산’ 안쓰고 반납하다니...

생활고로 갓난아기를 포기하거나 자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작 정부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육지원에 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100억원이 넘는 돈을 2년 연속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16일 여성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밝힌 여성부 자료는 ‘믿기 어려운 사실’로 가득하다.

저소득층 가구의 만 5세아를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에 있어 정부는 2002년에는 485억원 중 218억원을 안 쓰고 반납했고, 2003년에는 509억원 중 115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놓고도 올해 또 5% 인상된 534억원의 예산을 따냈다.

보육업무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됐으니까, 이 같은 불용 예산 발생은 보건복지부에서였다.

복지부는 당시 저소득층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월소득 223만원 미만인 가구로 했다.

지원 대상이 8만 7,000명이지만, 115억원을 반납한 작년의 경우 5만명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예산을 100% 집행하는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6월 보육업무를 이관받은 여성부는 이제 겨우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 나섰다.

여성부측은 “조사 결과가 나올 내년 초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5세 지원 대상 아동 숫자는 9만5000명, 예산액은 768억원으로 43%나 증가한 예산안을 냈다.

불용 예산이 45%, 22%나 되는데도 해마다 예산이 올라간다면 적정 예산 편성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분명 수요가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을 포기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찌란 말인가.

따놓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력은 ‘보육의 공공성’을 목표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영유아보육법의 의미마저 무색케 한다.

2004년 10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자수첩

김윤덕/문화부기자

소득증가 크게 앞지르는 사회보험 부담

사회보험료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원 포착이

쉬운 직장인의 경우 지난 9년간 보수는 7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각종 보험료는 370%나 증가해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10배로 뛰어올라 피용자보수에 대한 비율도 지난 95년 0.69%에 지나지 않던 것이 지난해 4.23%로 급증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그동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금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금은 지난해 1인당 383만원 꼴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25.5%에 이르렀다. 이는 조세부담이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전년 대비 조세부담률은 8.4% 증가한 데 비해 국민부담금은 그보다 높은 9.4%가 늘어난 것을 보면 사회보장성 기여금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지나치게 직장인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원리상 연대성을 강조한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지난 2002년에 만도 2조 5,000억원에 이르던 건강

보험의 누적적자도 올해에는 1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노력도 눈에 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준조세 성격이 강한 보험료를 인상 등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결코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불공평이 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급등은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봉급생활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최대한 부과재원을 찾아내고 납부유예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보험급여비의 누수현상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등이 도입되어 제대로 정착된다면 부당·허위청구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의료업계에 급여비가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1일자 서울경제 사설

2004년 11월호 통권 제10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권오성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간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인쇄 / 고려문화사 2277-1509

- 월간 재정포럼 / 2004년 11월 15일 발행 / 제9권 제11호(통권 제10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7859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 (02)2186-2133 FAX : (02)2186-2139

E-mail : pub@kipf.re.kr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양재남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